

발간등록번호

2026년 6월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의료기관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자동차보험심사센터

# Contents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 CHAPTER 01. 개요

I. 조직현황 및 심사 절차 .....	1
II.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2
III.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6

## CHAPTER 0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I. [의과] 심사현황 및 '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	10
II. [의과] 심사기준 및 공개심의사례 .....	11
III. [한의과] 심사현황 및 '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	43
IV. [한의과] 심사기준 및 공개심의사례 .....	44
V. [치과] 심사현황 .....	77
VI. [치과] 심사기준 .....	78

## CHAPTER 03. 주요 안내사항

I.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83
II. 심사참고자료 .....	86
III.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 .....	89
IV. 자동차보험 데이터 제공서비스 .....	93
V.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한 자료 제출 등 .....	94
VI.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	101
VII. 청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	108
VIII. 약침 관리시스템 .....	118

## CHAPTER 04. 기타

I. 청구오류 점검 .....	121
II.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다빈도 청구착오 항목 안내 .....	130



# 개 요



- I. 조직 현황 및 심사 절차  
1
- II.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2
- III.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6



- ① (청구) 월 or 주 단위
- ② (접수) 접수증 발급,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
- ③ (사전점검) 기재, 자격사항 오기여부 등 사전점검
- ④ (청구오류 수정보완) 단가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의료기관의 청구 오류로 진료수가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의료기관에 반송하거나 2일의 기간 내에 수정·보완 요청
- ⑤ (자격점검) 보험회사등에서 자격점검 후 결과를 2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
- ⑥ (심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적합한 지를 심사
- ⑦ (결과통보·지급)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통보 / 통보일 14일 이내 지급
- ⑧ (이의제기)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60일 이내 처리

## II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수가기준 체계 비교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장~제4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용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제5조제5항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제3항 관련)
행정해석(보건복지부)	행정해석(국토교통부)
심사지침(심평원장 공고) 공개심의사례	심사지침(심평원장 공고) 공개심의사례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 제4조(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제5조 제3항)
진료수가 (행위)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
인정범위	· 건강보험 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는 요양급여대상에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

제목	세부인정사항(제5조 제3항)
진료수가 (약제)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li> <li>·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우선 인정</li> <li>· 등재되지 않은 약제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한 약제로서 등재된 약제 중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li> </ul>
진료수가 (치료재료)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법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 적절하게 사용</li> <li>·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 우선 인정</li> <li>·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진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거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li> <li>· 건강보험기준에서 인정범위 등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 중분류의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 용도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사례별 인정</li> </ul>

## ○ 진료수가 인정범위 및 제외 대상

인정범위(제5조)	인정 제외대상(제6조)
건강보험기준(급여/비급여)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 [별표 1]	기왕증 진료비 (다만,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경우는 예외)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별표 2]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치료상 또는 병실 사정 등 예외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3]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 4]	의사의 퇴원 및 전원지시에 불응하여 증가된 진료비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에 서면 통지 (보험회사 등) 지급보증 중지 여부 회신

- 인정범위 해당: 환자부담금 없음 / 인정범위 제외: 교통사고환자 등에게 비용청구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2 중 일부 항목은 적용 제외
- [별표4] 국립교통재활병원 대상 시범운영 <2014.9.1.>
- [별표2] & 산재[별표2] 항목이 건강보험기준 개정으로 요양급여 범위 포함 시 그날부터 건강보험 기준 적용

-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제3항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증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상해급별	상해내용
12급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단순 고막 파열,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별표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분류	세부인정사항(제5조제2항제1호)														
일반사항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2%, 병원 6%, 의원 0%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5) 및 (6)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입원체감률</th> </tr> <tr> <th>자동차보험</th> <th>건강보험</th> </tr> </thead> <tbody> <tr> <td>상급종합병원</td> <td>기간불문 100%, 병원 관리료 100% 가산</td> <td>1~15일: 100%</td> </tr> <tr> <td>종합병원</td> <td>기간불문 100%</td> <td>16~30일: 90%</td> </tr> <tr> <td>병원·의원</td> <td>51~150일 90%, 150일 초과 85%</td> <td>31일부터: 85%</td> </tr> </tbody> </table>	구분	입원체감률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기간불문 100%, 병원 관리료 100% 가산	1~15일: 100%	종합병원	기간불문 100%	16~30일: 90%	병원·의원	51~150일 90%, 150일 초과 85%	31일부터: 85%
구분	입원체감률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기간불문 100%, 병원 관리료 100% 가산	1~15일: 100%													
종합병원	기간불문 100%	16~30일: 90%													
병원·의원	51~150일 90%, 150일 초과 85%	31일부터: 85%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

### ○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 한방물리요법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가능  
(자동차운영보험과-9328호, '23.12.26.)

### ○ 한방물리요법 장비 신고방법

- 한방물리요법 청구 전 서면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신고 (자보심사운영부)
  - 가. 제출서류: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1부),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증 1부
  - 나. 제출방법: 서면신고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신고
    - ① 서면신고
      - 한방물리요법 장비 보유 확인서에 장비번호, 장비명, 식약처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 사항, 적용일자 등 기재
      - 확인서 다운로드: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208번 「한방물리요법 장비 제출 안내 사항」
    - ② 요양기관업무포털 신고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한방물리요법 장비신고 접수
  - 다. 장비신고 제출 결과 확인방법(제출 결과 인정여부 확인 필수)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한방물리요법 장비신고 결과조회

### ○ 한방물리요법 신고대상 장비

장비번호	장비명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코드	명칭
C10400	초음파치료기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C10500	초단파치료기		
C10600	극초단파치료기		
C10801	저주파자극기	93026	경피적전기자극요법(TENS)
C10802	저주파자극기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C20800	간헐적견인치료기	93028	경추견인
		93029	골반견인

### Ⅲ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서식과 작성요령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비용산정 목록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한 목록표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비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대상이 아닌 행위 및 치료재료 (“신의료기술등”이라 한다)의 급여 결정신청건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의 항목 중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진료항목

#### ■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목록표 등의 제출)
  - 제출 목록

종류	세부항목	비고
원료약 및 자체 조제(제제)약, 급여 약제·치료재료	- 건강보험과 동일	건강보험 구입목록 신고분은 제출 생략
비용산정 목록표 (비급여행위 등)	-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및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결정 신청건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항목 중 실제 소요비용, 실구입가 등으로 명시된 수가	1개 코드에 세부명칭금액이 여러 개인 경우 참조란에 세부명칭 기재
비급여 약제 구입목록표	- 건강보험 기준의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비급여 약제 및 보훈급여약제(건위소화제) 등)	거래명세서 등 구입 증빙자료 제출
비급여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 비급여 치료재료 목록에 있는 재료	

- 제출 방법

- 가. 진료수가 청구 전 정보통신망(진료비청구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으로 제출
  - 청구서 및 명세서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서면으로 제출 가능
- 나. 급여 /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 제출
  - 급여 항목: 요양급여비용 심사관할 본원·본부(건강보험 제출처)에 제출
  - 비급여 항목: 자동차보험심사센터(본원)에 제출
- 다. 제출 결과 확인(제출 결과 인정여부 확인 필수)
  - 신청·제출 진행과정,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 제출

- 제16조(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

- 보험회사등이 부여한 사고접수번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보 받은 지급보증번호를 명세서에 기재
  - 가. 사고접수 번호 예시 (※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부여체계 참조)
    -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 등에서 부여한 번호를 “-”를 포함하여 기재  
예시) 현대해상화재보험: 1903092506-20-001  
한화손해보험: 201908-27272-01-002
  - 나. 지급보증번호 예시
    - “-”를 포함하여 17자리로 기재
    - 구성체계: 보험회사등 코드(2자리)-지급보증 해당년월(6자리)-일련번호(7자리)  
예시) 02-202001-0000001
  - 다. 보험회사등 자격점검 업무 흐름도
    - 심사평가원: 청구내역(자격정보) 보험회사등에 통보
    - 보험회사등: 자격점검 후 결과를 2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
    - 심사평가원: 보험회사등 자격점검 관련 심사불능 내용 심사결과에 반영 통보(J1)  
\* 유의사항: J1 불능 세부내용은 보험회사등에 문의, 심사평가원에서는 확인 불가
  - 라. 교통사고 환자 자격 사전점검(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메시지코드 T1-01
    - 보험회사등: 보험자격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사전 송신
    - 심사평가원: 접수 시 사전에 자격점검, 불일치 시 T1-01 메시지 코드 발생
    -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확인을 통해 접수 시 수정가능, 심사불능 사전 예방  
\* 심사불능코드가 아닌 메시지 코드로 심사는 진행되며 보완청구 불필요
    - AFK 등 수정 보완처리 기간인 2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자격점검 오류사항 수정 가능

• J1 보험회사등 요청에 의한 지급불능

세부코드	사유
J1-01	보험회사등이 알린 한도초과
J1-02	합의 이후 발생한 진료비
J1-03	지급보증 중지 또는 사망일 이후 진료분
J1-04	보험회사 등 코드 기재착오, 타보험사 대상건
J1-06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 또는 확인불가
J1-07	기타 사유
J1-08	시범재활치료대상자 또는 시범재활치료기간 적용착오
J1-09	보험회사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
J1-10	동일 환자 내원일자 중복 또는 기지급분 중복 청구
J1-11	교통사고 진료비 개인처리
J1-12	환자납부액(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 포함)로부터 직접 받은 진료비) 청구착오
J1-13	사고일 이전 진료분 청구(진료개시일, 내원일자가 사고일자 보다 빠른 경우)
J1-14	환자 또는 의료기관 정보 불일치

○ 제24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

- 심사평가원은 제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진료수가의 심사 및 이의제기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환자에게 발행된 진료비계산서 사본 등 진료 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동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I. [의과] 심사현황 및 '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10
II. [의과] 심사기준 및 공개심의사례	11
III. [한의과] 심사현황 및 '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43
IV. [한의과] 심사기준 및 공개심의사례	44
V. [치과] 심사현황	77
VI. [치과] 심사기준	78

## I [의과] 심사현황 및 '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 ■ 2025년 심사현황 [의과]



- 2025년 심결건수는 6,960천 건으로  
⇒ '21년 대비 14.9% 감소
- 2025년 심결 총 진료비는 1조 1,065억 원으로  
⇒ '21년 대비 2.6% 증가

- 2025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11,182기관으로  
⇒ '21년 대비 7.8% 증가

### ■ 20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 신경차단술
-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동종진피(INJECT용/POWDE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 안내 > 순번 41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 [의과] 심사기준 및 공개심의사례

### ■ 주요 심사기준

- [기왕증]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진료비 처리방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의 진료비

구분	내용
보험회사등	환자 or 보호자에게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 서면 안내
의료기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비 구분하여 청구
심사기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 진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조항(합병증, 기왕증 악화)에 해당되는 경우는 인정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1]

대분류	다리 적용하는 사항
제5장 주사료	-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
제7장 이학요법료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안면 또는 경부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 -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 50,000원 산정(키-9. VI010)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
키-10		반흔구축성형술 Release of Scar Contracture	
		주: 1. 운동제한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Z-plasty 혹은 W-plasty 등 국소피판에 해당하는 피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 전 반흔 길이의 1.5배를 산정한다.	
		가. 안면(cm당)	
	VI021	(1) 상급종합병원	100,000
	VI022	(2) 종합병원	80,000
	VI023	(3) 병원	70,000
	VI024	(4) 의원	60,000
		나. 기타부위(cm당)	
	VI031	(1) 상급종합병원	70,000
	VI032	(2) 종합병원	60,000
	VI033	(3) 병원	50,000
	VI034	(4) 의원	40,000

※ 건강보험의 '자-24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은 적용하지 않음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
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Autogenous Fat Graft or Dermo-Fat Graft	
		주: 2부위 이상 시술 시 이식한 부위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VI041	가. 4㎢ 미만	511,800
	VI042	나. 4㎢ 이상 ~ 16㎢ 미만	716,520
	VI043	다. 16㎢ 이상 ~ 36㎢ 미만	921,240
	VI044	라. 36㎢ 이상 ~ 100㎢ 미만	1,535,400
VI045	마. 100㎢ 이상	2,047,200	

※ 건강보험의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 이식술'은 적용하지 않음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
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  주: 2부위 이상 시술 시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VI071	가. 0 ~ 25㎢ 미만	153,540
	VI072	나. 25㎢ 이상 ~ 100㎢ 미만	255,900
	VI073	다. 100㎢ 이상	358,260

※ 건강보험의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는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
키-1		상급병실료	
	VA011	가. 1인실	실제 소요비용
	VA012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
VA013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 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키-21		슬링 sling	
	VM061 VM062	가. 팔걸이 arm sling 나. 쇄골밴드, 8자형 밴드	실구입가
키-22	VM070	캐스트 신발 cast or splint shoe	실구입가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3	증식치료 (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li> <li>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li> <li>3. 관절 및 그 주위부위를 1부위(요·천추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일해 2이상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2부위 이내만 산정</li> <li>4. '가', '나' 각각 치료기간 중 1주 이상의 간격으로 6회 까지 인정</li> </ol>	5,750 11,520
어-4	도수치료 (Manual Therapy) [1일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li> <li>나.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li> </ul> </li> <li>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li> <li>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마사지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li> </ol>	68,000
어-5	체외충격파 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유합(아름)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li> <li>2.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부터 4회 이내만 산정</li> <li>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li> </ol>	42,030

**【관련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26.1.1. 진료분부터 적용

##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표3]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시 수가 산정 방법	<p>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의뢰한 의료기관</p> <p>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진료 의뢰 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뢰하며, 아래 2.의 진료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아니함</p> <p>2. 의뢰받은 의료기관</p> <p>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함.</p> <p>나. 진찰료는 입원 진료 중인 해당 상병과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p> <p>3. 청구방법</p> <p>가. 상기 1. 및 2.의 의료기관은 진료수가 청구 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청구함</p>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2.12.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심사지침

○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가-2	입원료	<p>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료 심사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li> <li>2. 단순 통원불편·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li>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li> </ol>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22.5.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분류번호	분류	내용																																																								
가-8	협진찰료	<p>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원회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의과</th> <th colspan="2">한의과</th> </tr> <tr> <th>분류코드</th> <th>분류명칭</th> <th>분류코드</th> <th>분류명칭</th> </tr> </thead> <tbody> <tr> <td>MM010</td> <td>표층열치료</td> <td>40700</td> <td>경피경근온열요법</td> </tr> <tr> <td>MM020</td> <td>심층열치료</td> <td>93023</td> <td>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td> </tr> <tr> <td>MM011</td> <td>한냉치료</td> <td>40702</td> <td>경피경근한냉요법</td> </tr> <tr> <td>MM070</td> <td>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d> <td>93026</td> <td>경피전기자극요법</td> </tr> <tr> <td>MM080</td> <td>간섭파전류치료</td> <td>93027</td> <td>경근간섭저주파요법</td> </tr> <tr> <td>MM051</td> <td>경추견인</td> <td>93028</td> <td>경추견인</td> </tr> <tr> <td>MM052</td> <td>골반견인</td> <td>93029</td> <td>골반견인</td> </tr> <tr> <td>MM090</td> <td>마사지</td> <td>93032</td> <td>근건이완수기요법</td> </tr> <tr> <td>MM101</td> <td>단순운동치료</td> <td>93030</td> <td>도인운동요법</td> </tr> <tr> <td>MM102</td> <td>복합운동치료</td> <td>93030</td> <td>도인운동요법</td> </tr> <tr> <td>MM300</td> <td>적외선치료</td> <td>40701</td> <td>경피적외선 조사요법</td> </tr> <tr> <td>51040</td> <td>도수치료</td> <td>40710</td> <td>추나요법(단순)</td> </tr> </tbody> </table>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 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 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분류번호	분류	내용
일반사항	-	<p>1.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동일 적용하되,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함</p> <p>※ 주된 치료는 상병관련 주 처치 등을 고려하여 진료내역 기준으로 함</p> <p>2. 다만, 같은 날 이루어진 진료라도 다음의 경우는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 범위에서 제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해당 상병 및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목적의 영상촬영검사 등과 해당 진찰료</p> <p>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해당 진찰료</p> <p>다.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p> <p>*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 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23.9.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서-121	이온삼투요법 [1일당]	<p>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적용증(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및 실시기간은 동일 적용함</p> <p>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례별로 인정함</p> <p>3.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는 동시 시행할 수 있음</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2호, '20.12.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분류 번호	분류	내용
어-4	도수치료 (Manual Therapy)	<p>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p> <p>나.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p> <p>다. 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p> <p>※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 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의과)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23.12.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키-1	상급병실료	<p>교통사고환자가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격리실 입원료)적용 가능 환자 (※이 경우,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li> <li>2)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환자로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경우</li> <li>3)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의 24시간 상시 monitoring이 필요한 경우</li> </ol> <p>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p> <p>○ 입원진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유 일반병실(남녀 구분하여 각각의 일반병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22.5.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인정범위

분류번호	분류	내용
사-127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 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응증 및 실시횟수를 동일 적용함</li> <li>2. 다만, 수상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상의 환자상태, 자동차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의사소견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li> </ol>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23.9.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두부CT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다-245	[전산화단 층영상진 단] 가.두부 Brain	<p>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초기에 촬영가능한 두부CT의 합당한 증상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p> <p>가. 합당한 증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식소실</li> <li>2) 출혈소견이 있는 경우(혈전제 복용중인 환자, 혈액응고장애환자)</li> <li>3) 두통, 어지러움, 오심(또는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li> <li>4) 의식저하</li> <li>5) 두부 또는 얼굴에 직접적인 외상흔적이 있는 경우</li> <li>6) 고위험 수상기전(보행자 교통사고·자전거운행자 교통사고·추돌사고로 튕겨나간 승객, 1m 또는 5계단 이상 높이. 빠른 속도에서의 자동차 사고, 안전벨트/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인 경우)</li> <li>7) alcoholism 기왕력</li> </ol> <p>나. 필수기록 작성</p> <p>○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 기전을 포함한 환자의 주관적, 객관적 기록 (의식수준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p> <p>다. 경과관찰 기간</p> <p>○ 가.이외 환자상태에 대한 24~48시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지속시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함</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93호, '22.2.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CT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다-245	[전산화단 층영상진단] 바.척추 Spine	<p>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초기에 촬영 가능한 척추CT의 합당한 증상은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합당한 증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 기왕증이 악화된 환자</li> <li>2) 신경학적 이상징후</li> <li>3) 의식상태의 변화</li> <li>4) 술 또는 약물에 의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li> <li>5) 단순 방사선 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li> </ol> <p>나. 필수기록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 기전을 포함한 환자의 주관적, 객관적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li> </ul> <p>다. 경과관찰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이외 환자상태에 대한 3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지속시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li> </ul>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93호, '22.2.1.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일반사항	-	<p>교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과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인정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나.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아래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20%;">분류코드</th> <th style="width: 60%;">분류명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1절 기본물리치료</td> <td>MM011</td> <td>한냉치료-콜드팩</td> </tr> <tr> <td>MM012</td> <td>한냉치료-냉동치료</td> </tr> <tr> <td>MM030</td> <td>자외선치료 [1일당]</td> </tr> <tr> <td>MM010</td> <td>표층열치료</td> </tr> <tr> <td>MM020</td> <td>심층열치료 [1일당]</td> </tr> <tr> <td>MM070</td> <td>경피적 전기자극치료</td> </tr> <tr> <td>MM080</td> <td>간섭파전류치료</td> </tr> <tr> <td rowspan="11" style="text-align: center;">2절 기본물리치료</td> <td>MM041</td> <td>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td> </tr> <tr> <td>MM042</td> <td>파라핀욕 [1일당]</td> </tr> <tr> <td>MM043</td> <td>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td> </tr> <tr> <td>MM044</td> <td>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td> </tr> <tr> <td>MM045</td> <td>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td> </tr> <tr> <td>MM046</td> <td>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td> </tr> <tr> <td>MM049</td> <td>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td> </tr> <tr> <td>MM051</td> <td>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경인</td> </tr> <tr> <td>MM052</td> <td>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td> </tr> <tr> <td>MM060</td> <td>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td> </tr> <tr> <td>MM085</td> <td>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td> </tr> <tr> <td>MM170</td> <td>유속치료 [1일당]</td> </tr> </tbody> </table>	구분	분류코드	분류명칭	1절 기본물리치료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30	자외선치료 [1일당]	MM010	표층열치료	MM020	심층열치료 [1일당]	MM070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MM080	간섭파전류치료	2절 기본물리치료	MM041	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MM042	파라핀욕 [1일당]	MM043	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MM044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MM045	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MM046	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	MM049	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MM051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경인	MM052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MM060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구분	분류코드	분류명칭																																									
1절 기본물리치료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30	자외선치료 [1일당]																																									
	MM010	표층열치료																																									
	MM020	심층열치료 [1일당]																																									
	MM070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MM080	간섭파전류치료																																									
2절 기본물리치료	MM041	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MM042	파라핀욕 [1일당]																																									
	MM043	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MM044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MM045	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MM046	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																																									
	MM049	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MM051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경인																																									
	MM052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MM060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MM170	유속치료 [1일당]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 '24.9.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텍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주 등)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일반사항	-	<p>교통사고환자의 수술 마취시 신경근 차단역 역전제로 투여하는 Sugammadex sodium 주사제(품명: 브리디온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ASA-PS* 3 이상 환자  나. ASA-PS 2 이하 환자  1) 2세 이상 ~ 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2) BMI≥30kg/m2 이상의 비만환자  다. 기도 확보 및 기도 유지가 어려운 환자(예: 안면 외상 또는 경추 손상 등)  라. 신속한 신경근 차단역 역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1) Neostigmine methylsulfate 제제 및 Pyridostigmine bromide 제제를 투여하였으나, 신경근 차단역 역전에 실패한 경우  2) 수술 종료시점까지 깊은 신경근 차단상태가 지속되는 환자로 TOF(Train-of-four stimulation, 사연속자극) 등의 신경근 감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p> <p>* 미국 마취과 학회 신체상태 분류(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ASA-PS)</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24.11.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의과)	<p>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적응증: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등)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p> <p>나. 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호, '26.1.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환자의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체외금속 고정술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p>교통사고 골절환자에게 시행하는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인정하며, 원위요골 골절에 시행하는 체외금속 고정술은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적응증</p> <p>가. 체내금속 고정술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p> <p>나. 개방성골절 중 II형, III형(Gustilo &amp; Anderson 분류)*</p> <p>다. 위 가. 및 나. 이외에도 심한 분쇄골절, 전위는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p> <p>2.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 시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p>

분류번호	분류	내용
		<p>* Gustilo &amp; Anderson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형 개방성 골절: 창상 크기 1cm 이하 경미한 연부조직 손상 및 오염</li> <li>- II형 개방성 골절: 1cm 이상의 창상 및 중등도의 연부조직 손상과 오염</li> <li>- III형 개방성 골절: 10cm 이상의 심하게 오염된 창상 및 근육의 손상, 심한 골편의 전위</li> </ul>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5호(2025.8.1. 진료분 부터 시행)

■ 공개심의사례

☞ 공개심의사례 조회: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급여기준 > 심사기준 조회

○ 정형외과 수술 후 사용한 유착방지제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69세,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일자] '17.6.4.                      [진료일자] '17.6.4. ~ 7.22. (입원 49일)                      [상병명]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근 및 건 성형 동반)-복잡 (N0938)                      - PROTAD 주 전규격</p>	<p>-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시행 후 사용한 유착방지제 PROTAD는 본 수술에 대해 교과서 및 임상 논문에서 그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치료 재료에 대한 식약처 허가범위 외 사용이며 수술 후 유착(adhesion)이 예상되는 경우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식약처 허가사항: 주로 자궁강 내 수술 시 사용</p>
<p>[환자] 여자/43세 자동차전복사고                      [사고일자] '17.7.10.                      [진료일자] '17.7.10. ~ 7.13. (입원 4일)                      [상병명]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지골간 관절)                      [청구내역]                      -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절제,봉합,박리] (N0931)                      - 하이배리(HYBARRY)</p>	<p>- 건 및 인대성형술에 사용한 유착방지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약처 허가 범위 외 사용으로 수술 후 사용된 유착방지제 하이배리(HYBARRY)*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식약처 허가사항: 주로 척추수술 시 유착 감소</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7.9.20.)

## ○ 단순 열상, 찰과상 및 삼출물이 없는 창상관리에 사용된 드레싱재료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76세 보행 중 자전거 TA            [사고일자] '17.7.7.            [진료일자] '17.7.7. (외래 1일)            [상병명] 비골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p> <p>[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RBACT GEL 전규격 (BM5005MV) 1*1*1</li> <li>- NEO DERMAL ACTIVATOR 1G, 2G, 5G (BM5002RQ) 1*1*1</li> <li>- COLLAHEAL PLUS 전규격 (BM5303NT) 1*1*1</li> <li>- BURNTEC 20cm × 20cm (MB045032) 1*1*1</li> <li>- 메디타치에이드 10cm × 10cm (MB032460) 1*1*1</li> <li>- 메디타치에이드 20cm × 20cm (MB032463) 1*1*1</li> <li>- 메디타치에이드 20cm × 20cm (MB032463) 1*1*1</li> </ul> <p>[진료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7 창상봉합술(안면부위 단순봉합)</li> </ul>	<p>○ 동 기관은 단순 창상에 드레싱 재료 다종·다량 청구기관으로 동 건은 Out car TA로 Glabella Laceration(2cm), 팔꿈치와 코 정중 및 오른쪽 눈 중간 아래쪽에 abrasion (0.5~1cm)으로 창상봉합술 등 처치 후 습윤드레싱 4개, Sorbact gel(하이드로겔), Neo Dermal Activator, Collaheal Plus(콜라겐) 재료를 청구한 사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레싱 재료는 허가범위 내에서 삼출물 등 창상 특성에 따라 종류나 크기를 선택하여야함</li> <li>- 동 건은 열상과 찰과상의 단순 창상으로 삼출물이 없는 특성과 크기(0.5~2cm) 등을 고려하여 습윤드레싱 2개만 인정하며 그 외는 심사조정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7.11.8.)

## ○ 병용 사용된 골대체제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44세            [사고일자] '13.9.7.            [진료일자] '13.9.7.~ 9.13. (입원 7일)            [상병명] L2부위의 골절(폐쇄성), 기타 발가락의 골절, 뇌진탕</p> <p>[청구내역]</p>	<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2호(치료재료)에 따르면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되,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에서 급여(Bongros Hage), 비급여(Bongener)의 골대체제를 병용</li> </ul>

청구내역	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46나(3) 척추고정술-요추</li> <li>- BONGENER 전규격 (비급여) 1*1</li> <li>- BONGROS HAGE 10CC (급여) 1*1</li> </ul>	<p>사용하여 추체간골유합술을 시행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골대체제 간의 병용 사용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나 어느 한 제제의 효과가 월등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동 사례에서 추체간 scaffold 역할을 하는 Bongros Hage를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Bongener는 심사조정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심사 자문위원회(의과) (공개심의사례: '14.6.26.)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수상초기 촬영한 두부CT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51세 [사고일자] '20.5.25. [진료일자] '20.5.25. (외래 1일)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p> <p>[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li> </ul> <p>[주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통, 머리가 멍멍한 느낌, 목통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진료기록 및 환자상태 등 참조하여 의식 소실 및 직접적 두부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없고 단순 두통, 머리가 멍멍한 증상 호소만으로 사고 당일 촬영한 두부CT는 인정하지 아니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11.17.)

○ 전신다발성 반흔에 부위와 시행날짜를 달리하여 실시한 레이저 반흔성형술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35 [사고일자] '19.11.23. [사고경위] 오토바이 TA(150km/hr로 달리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서 떨어져 수상) [진료일자] '20.7.23/8.3/8.6/9.25/12.3/12.8/12.17.(외래 7일) [상병명]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치료 및 수술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오토바이 TA후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상병으로 양측사지, 엉덩이 등 전신다발성 반흔부위에 타의료기관에서 레이저 2회 시행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오른팔, 오른다리, 왼쪽다리 부위별로 시행날짜를 달리하여 레이저를 7회 시행한 건으로 레이저 반흔성형술 5회 초과 건에 대해 불인정되어 이의제기한 사례임</li> <li>- 제출된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함</li> </ul>

청구내역	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071 레이저 반흔성형술-0~25㎠미만 1*1*1</li> <li>- VI072 레이저 반흔성형술-25~100㎠미만 1*1*3</li> <li>- VI073 레이저 반흔성형술-100㎠이상 1*1*3</li> </ul> <p>[진료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23.: 오른 무릎(9*4), 오른 종아리(10*3.5), 오른 발(0.7*1) 루메니스 #1</li> <li>- '20.8.3.: 오른 팔(12*13), 오른 손목 (1*2)(1.5*2) 루메니스 #1</li> <li>- '20.8.6.: 왼 무릎 옆(4*3), 왼 무릎 앞(5*1) 왼 발목 (1.5*1), 왼 손목(2*0.5), 왼 팔꿈치(4*3) 루메니스 #1</li> <li>- '20.9.25.: 오른 팔(12*13), 오른 손목(1.5*2) 루메니스 #2</li> <li>- '20.12.3.: 오른 팔(12*13) 오른 손목(1*2)(1.5*2) 루메니스 #3</li> <li>- '20.12.8.: 오른 무릎(9*4) 오른 종아리(10*3.5) 루메니스 #2</li> <li>- '20.12.17.: 왼 무릎 옆(4*3) 왼 무릎 앞(5*1) 왼 발목 (1.5*1) 루메니스 #2</li> </ul>	<p>때 현행 인정기준 상 2부위 이상 레이저 시술시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하는 바, 레이저 반흔성형술에 대한 이의제기 기각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1.6.22.)

○ 수상초 시행 및 다빈도 실시한 레이저 반흔성형술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54                      [사고일자] '20.10.15                      [사고경위] 자전거 TA                      [진료일자] '20.10.15. ~ 11.4. (입원일수 21일)                      [상병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처치 및 수술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margin: 10px 0;"> <p>- VI071 레이저 반흔성형술-0~25㎠미만 1*1*3                          - VI072 레이저 반흔성형술-25~100㎠미만 1*1*6</p> </div> <p>[진료내역]                      - '20.10.16./10.17./10.19./10.20: 우측무릎 흉터 5×5cm traumatic tatto removal with ND-yag laser                      - '20.10.21: 좌측 후두부 열상부위 외상성 탈모부위 8~9cm Fractional CO2 laser시행                      - '20.10.22: 좌측 후두부 열상부위 외상성 탈모부위 8~9cm biolight 시행                      - '20.10.30: 좌측 후두부 열상부위 외상성 탈모부위 8~9cm Fractional CO2 laser시행                      - '20.10.31: 좌측 후두부 열상부위 외상성 탈모부위 8~9cm biolight 시행                      - '20.11.3: 좌측 후두부 열상부위 외상성 탈모부위 8~9cm Fractional CO2 laser시행</p>	<p>- 동 건은 자전거 TA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병으로 사고 다음날부터 우측 무릎 흉터에 레이저를 4회 실시하고, 사고 6일째부터 후두부 외상성 탈모부위에 레이저를 5회 실시하여 수상 직후 20일 동안 총 9회 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시행한 건으로 1차 심사 시 불인정되어 이의제기한 사례임</p> <p>- 제출된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할 때 상처부위는 dressing 등을 먼저 시행하여 피부재생이 진행된 이후에 레이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수상 직후에 1-2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시행한 레이저 반흔성형술은 과한 치료로 보여지는 바, 레이저 반흔성형술에 대한 이의제기 기각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1.6.22.)

## ○ 척추 MRI 표준영상 범위 외 추가로 촬영한 맥동파순서열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36 [사고일자] '22.5.8. [사고경위] In car TA 고속도로에서 정차중 후위차량 충돌 [진료일자] '22.5.16. (수상 9일차)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p> <p>[검사내역]</p> <p>-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 -촬영료 등 [품질관리검사 적합판정] 1*1*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표준영상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한 경우-3개추가 1*1*1</p> <p>[진료내역]</p> <p>- Pain in low back and pelvic area · Radiating pain(-/-)Tingling(-/-) · Numbness(-/-)Weakness(-/-) · Past surgical history(-) - '22.5.16.: L-Spine MRI · No acute fracture or dislocation · Bulging disc of L-Spine with spinal stenosis</p>	<p>- 동 건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수상 9일차 요천추 MRI 및 맥동파순서열 3개 추가 촬영한 사례임</p> <p>-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촬영한 맥동파순서열은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여/74 [사고일자] '22.2.18. [사고경위] In car TA [진료일자] '22.3.23. (수상 5주차) [상병명]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관절증, 상세불명 부분</p> <p>[검사내역]</p> <p>-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흉추-일반 -촬영료 등 [품질관리검사 적합판정] 1*1*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 -촬영료 등 [품질관리검사 적합판정] 1*0.5*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표준영상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한 경우-1개추가 1*1*1</p>	<p>- 동 건은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병으로 수상 5주차 흉추와 요천추 MRI 및 맥동파순서열 1개 추가 촬영한 사례임</p> <p>-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결과, 통증이 지속되고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골절이 확인되는 등 골절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로 촬영한 맥동파순서열(fat-saturation T2WI)은 인정함</p>

청구내역	결정사항
[진료내역] - '22.3.16. · 허리통증/양다리 부종 · 휠체어 내원-아주대 L1 com Fx소견 · 뇌졸중/양다리 부종으로 사고 전에도 이노제 복용력 - '22.3.23. · MR L1 bursting Fx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2.8.10.)

○ 진료기록 및 입원환자 관리형태 등 참조, 입원 적정성 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환자] 남자/21세 In car TA, 조수석 [사고일자] '22.4.12. [진료일자] '22.4.13. ~ 4.26. (입원 14일) [상병명]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한의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13	- 환자상태 변화,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즉시 환자를 관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적·구조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입원환자에 대한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확인되지 않는 바, 해당 기관의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함
[환자] 남자/24세 In car TA, 택시승객(조 수석 뒷자리), 전면부 충격 [사고일자] '22.4.20. [진료일자] '22.4.21. ~ 4.27. (입원 7일) [상병명]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한의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6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4.10.)

○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척추 MRI 인정여부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 및 기준을 따르되, 건강보험기준에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31세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정차 중 후방추돌</p> <p>[사고일자] '22.11.11.</p> <p>[진료일자] '22.11.14.</p> <p>[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p> <p>[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추-일반-촬영료 등 1*1*1</li>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추-일반-판독료 1*1*1</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지 저림 증세가 지속되어 수상 7일 이전인 4일차에 요천추 MRI 촬영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는 있으나, 검사를 조기에 시행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요천추 MRI는 조정함</li> </ul>
<p>[환자] 남자/46세 In car TA</p> <p>[사고일자] '23.1.4.</p> <p>[진료일자] '23.1.13.</p> <p>[상병명]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경부)</p> <p>[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경추-일반-촬영료 등 1*1*1</li>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경추-일반-판독료 1*1*1</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뒷목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수상 10일차에 경추 MRI 촬영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단순통증이 지속되긴 하나,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경추 MRI는 조정함</li> </ul>
<p>[환자] 남자/63세 3차선 In car TA 정차 중 후방추돌</p> <p>[사고일자] '23.2.10.</p> <p>[진료일자] '23.2.17., 2.24.</p> <p>[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p> <p>[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요통이 지속되어 수상 8일차에 요천추 MRI 촬영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양 전완-손가락 까지 저린 느낌, 견인통 등을 호소하여 수상 15일차에 경추MRI 촬영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요천추 MRI는 단순 요통 지속 외에 신경학적 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조정하고, 경추 MRI는 저림 등 어깨의 신경학적 증상이 확인되어</li> </ul>

청구내역	결정사항
<p>(2023.2.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 -일반-촬영료 등 1*1*1</li>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 -일반-판독료 1*1*1</li> </ul> <p>(2023.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경추 -일반-촬영료 등 1*1*1</li>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경추 -일반-판독료 1*1*1</li> </ul>	<p>인정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5.10.)

## ○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 신장분사치료(Stretch and Spray Therapy)는 스트레칭의 선행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적용하는 기술로 근막동통증후군 등에서 근막통증유발점, 운동점, 압통점 등을 비활성화시켜 통증 완화 및 경직 감소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임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35세 정차하는 과정 중 후방추돌 [사고일자] '23.1.30. [진료일자] '23.2.14.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p>- 신장분사치료 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목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수상 16일에 신장분사치료(허리 골반 부위)를 1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li> </ul>
<p>[환자] 여자/26세 정차 중 후방 추돌, 택시 후방좌석 [사고일자] '23.2.9. [진료일자] '23.2.27., 2.28. [상병명] 경추·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p>- 신장분사치료 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좌측 손목, 좌측 등 통증 등을 호소하여 수상 19일, 20일에 신장분사치료(허리 골반 부위)를 2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li> </ul>
<p>[환자] 여자/59세 후진하는 차 봐주다가 차량 사이에 무릎이 끼임 [사고일자] '23.2.14. [진료일자] '23.2.14. ~ 4.19. [상병명]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통증 [청구내역]</p> <p>- 신장분사치료 1*1*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병으로 수상 당일부턴 왼쪽 대퇴골 골절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위해 65일간 입원하여 신장분사치료(왼쪽 종아리부분)를 35회를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li> </ul>
<p>[환자] 남자/66세 오토바이(운전자)로 후진하던 차량과 부딪힘 [사고일자] '23.3.27. [진료일자] '23.3.27. ~ 4.1. [상병명] 팔꿈치,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랫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다리의 상세 불명 단일신경변증, 급성 통증 [청구내역]</p> <p>- 신장분사치료 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병으로 수상 당일부턴 오른쪽 팔꿈치 통증, 등 통증, 왼쪽 무릎 통증으로 5일간 입원하여 신장분사치료(오른쪽 팔꿈치부위)를 5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7.18.)

○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동시에 시행한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33세 조수석TA                      [사고일자] '23.9.1.                      [진료일자] '23.9.19.                      [상병명] 경추·흉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p> <p>[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경간내주사 1*1*1</li> <li>-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경신경총 1*0.5*1</li> <li>-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추기 1*2.5*1</li> <li>- 제일리도카인주사액(리도카인염산염 0.4g/20mL) 1*0.2*1</li> <li>- 중화판에스주사액(염화 나트륨)(0.9g/100mL/병 (FP)) 1*0.1*1</li> </ul>	<p>○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28호), 미6신경간내주사의 정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5호)등을 종합하면, 신경차단술의 경우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경간내주사는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제를 같이 주사하여야 함</p> <p>-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내원하여 경추부위에 신경차단술과 신경간내주사를 시행한 사례임</p> <p>-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참조 후지내추기 차단술(LA358)은 250% 전부 인정하나 동시 시행한 경신경총차단술(LA251)은 진료기록부상 시행할 만한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경간내주사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신경차단술과 동일부위(경추)에 시행하여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11.21.)

○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동시에 시행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31세                      [사고일자] '23.7.29.                      [진료일자] '23.9.1.                      [상병명]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p> <p>[청구내역]</p>	<p>- 동 건은 경추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내원하여 경추부위 신경차단술과 경추·팔꿈치 부위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례임</p> <p>- 제출된 진료기록 등 참조 척수신경후지차단술(LA357)은 인정하나 동시 시행한 경신경총차단술(LA251)은 진료기록부상 시행할만한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경차단술과 동일부위(경추)에 시행한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p>

청구내역	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 0.2*1*1</li> <li>-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li> <li>경신경총 1*1*1</li> <li>-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li> <li>척수신경후지 1*1*1</li> <li>-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1*1*1</li> <li>- 심층열치료[1일당] 1*1*1</li> <li>- 경피적전기자극신경자극치료[TENS] 1*1*1</li> </ul>	TENS)도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11.21.)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59세                      [사고일자] '23.8.12.                      [진료일자] '23.8.12. ~ 8.31.                      [상병명] 대퇴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진료내역] X-ray: Fx. distal femur, knee, Rt.                      [골대체제 사용이유] distal femur의 Intra articular fracture의 communitation된 양상의 복합골절로 union을 위해 DBM 사용이 필요하였으며 femur medial side metaphysis에 longitudinal하게 10*3cm 가량의 bone defect 있어 인조뼈(파워본) 사용함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 1*1*1</li> <li>-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골반골, 대퇴골] 1*1*1</li> <li>- POWERBONE PUTTY 22.595G 1*1*1</li> <li>- MEDYFUSE 전규격 1*1*1</li> </ul> </div>	<p>- 동 건은 대퇴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상병으로 사지골절정복술(대퇴골)을 시행하며 급여 합성골 (POWERBONE)과 비급여 DBM(Medifuse)을 병용 사용한 사례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 하였으나 대체가능한 급여 DBM이 있고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여자/66세                      [사고일자] '23.9.2.                      [진료일자] '23.9.2. ~ 9.19.                      [상병명] 상세불명의 간질환, 척골과 요골 모두 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                      [골대체제 사용이유] Rt. distal radius &amp; ulna Fx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는 부족하여 DBM lcc injection into fx. site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 1*1*1</li> <li>- OSG DBM SYRINGE, ACCEL BONE SYRINGE 전규격 1*1*1</li> </ul> </div>	<p>- 동 건은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상병으로 사지골절정복술(요골) 시행하며 비급여 DBM(OSG DBM SYRINGE, ACCEL BONE SYRINGE)을 사용한 사례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으나 대체가능한 급여 DBM이 있고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4.5.7)

##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68세 [사고일자] '23.11.30. [진료일자] '23.12.1. ~ '24.2.22. [상병명]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T11 및 T12부위의 골절, 폐쇄성,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수술기록지] T11, L1, L2의 spinous process를 제거 후 decortication 시행 후 autogenous local bone, allogeneous chip bone and BMP-2 이용하여 posterior fusion 시행하였음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p> <p>1*1*1 - DUALPOR COLLAGEN PUTTY 10 1*1*1 - KORA SPINAL SYSTEM ROD 전규격 1*2*1 - KORA SPINAL SYSTEM-SCREW SET 1*8*1 - NOVOSIS 전규격 1*1*1</p> </div>	<p>- 동 건은 T11 및 T12부위의 골절 상병으로 흉요추 부위(T11~L2)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며 재조합 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NOVOSIS)와 합성골(DUALPOR COLLAGEN PUTTY)을 병용 사용한 사례로,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해당재료를 사용하였고 대체 가능한 급여 골대체제가 있으며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남자/66세 [사고일자] '23.9.2. [진료일자] '23.9.2. ~ 9.19. [상병명] 추간관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수술기록지] L1/2/3의 cap, screw, rod 모두 제거하였고 screw 제거된 부위에 대해 allo bone graft 시행함 [청구내역]</p>	<p>- 동 건은 추간관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상병으로 척수경막내종양 및 병소절제술(L1~3)을 시행하며 재조합골형성 단백질 함유 골이식재(BIO BMP2)와 동종골(CANCELLOUS CHIP)을 병용 사용한 사례로,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해당재료를 사용하였고 대체 가능한 급여 골대체제가 있으며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청구내역	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척수경막내중양및병소절제술[요추] 1*1*1</li> <li>- CANCELLOUS CHIP 30CC 2*1*1</li> <li>- BIO BMP2 전규격 1*1*1</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4.5.7.)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내손상 등에 투여한 레비티라세탐 주사제 인정여부  
·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레비티라세탐 주사제(품명: 레비티람주, 케프라주)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뇌전증 환자의 발작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2015년 요양급여여부 평가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아 비급여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급여 전환된 동일 품목의 약제(품명: 에필라탐주, 케라탐주, 큐팜주)가 확인됨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42세 [사고일자] '24.4.23. [진료일자] '23.4.23. ~ 5.15. [상병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청구내역] - (투약료) 케피람정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0.5g/1정)/A 1*2*34 - (주사료) 케프라주사(레비티라세탐)(0.5g/5mL)/B 1*2*3</p>	<p>- 동 건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상병으로 GTC type seizure에 레비티라세탐 주사제(품명: 케프라주)를 투약한 사례로, 대체 가능한 급여약제가 있으며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남자/29세 [사고일자] '24.2.12. [진료일자] '24.2.19. ~ 3.3. [상병명]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급성 출혈 후 빈혈,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 [청구내역] - (투약료) 케피람정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0.5g/1정)/A 1*2*14 - (주사료) 케프라주사(레비티라세탐)(0.5g/5mL)/B 1*2*2</p>	<p>- 동 건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으로 수술 전·후 seizure 예방 목적으로 레비티라세탐 주사제(품명: 케프라주)를 투약한 사례로,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해당약제를 사용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4.8.5.)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교통사고환자의 수술시 마취 유도목적으로 사용된 레미마졸람베실산염 주사제 인정여부
  -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레미마졸람베실산염 주사제는 성인에서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에 허가받은 약제로,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등 급여로 등재된 대체 약제가 확인됨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73세                      [사고일자] '24.4.16                      [진료일자] '24.4.16. ~ 5.7.                      [상병명]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정맥 기능부전(만성)(말초성), 구도를 동반한 구역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 1*1*1</li> <li>-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 1*4*1</li> <li>-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쇄골 1*1*1</li> <li>- 바이파보주50밀리그램(레미마졸람베실산염) (69.37mg/1병) 1*1*1</li> </ul> </div>	<p>- 동 건은 쇄골견봉단의 골절 상병으로 전신마취하 사지골절정복술을 시행하며 전신마취유도제로 레미마졸람베실산염 주사제를 투약한 사례로, 대체가능한 급여약제가 있으며 제출된 진료 기록상 해당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남자/62세                      [사고일자] '24.4.23.                      [진료일자] '24.4.23. ~ 5.9.                      [상병명]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박신경총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1*1</li> <li>- 상박신경총마취유지[1시간초과15분당] 1*4*1</li> <li>-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쇄골 1*1*1</li> <li>- 바이파보주50밀리그램(레미마졸람베실산염) (69.37mg/1병) 1*1*1</li> </ul> </div>	<p>- 동 건은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상병으로 상박신경총마취하 사지골절정복술을 시행하며 진정제로 레미마졸람베실산염 주사제를 투약한 사례로,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해당약제를 사용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4.8.5.)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철결핍 환자에게 투여된 철이소말토시드착염 주사제 인정여부
  -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철이소말토시드착염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빠른 철 보충이 필요한 철 결핍증 환자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베노훼림, 페린젝트 등 급여로 등재된 대체약제가 확인됨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62세 [사고일자] '24.4.10. [진료일자] '23.4.10. ~ 4.29. [상병명] 절구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관절병증(골반 부분및 대퇴, 양방의타박상 무릎의타박상등 [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1*1*1</li> <li>- 모노파우(철이소말토시드착염)(0.834g/2ml) 1*1*1</li> <li>-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1*1*1</li> <li>-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1*2*1</li> </ul>	<p>- 동 건은 절구의 골절(폐쇄성) 상병 등으로 관혈적 정복수술 후 수혈과 함께 철이소말토시드착염 주사제를 투약한 사례로, 대체가능한 급여약제가 있으며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남자/65세 [사고일자] '23.12.13. [진료일자] '23.12.13. ~ 12.24. [상병명]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양측 복사골절(발목 개방성), 거골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등 [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외금속고정술(상완골,하퇴골) 1*2*1</li> <li>- 체외금속고정술(수근골,족근골)[응급아래] 1*1*1</li> <li>-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 1*1*1</li> <li>- 체외고정용금속제거술[골반골,대퇴골] 1*1*1</li> <li>- 체외고정용금속제거술[상완골,하퇴골] 1*1*1</li> <li>- 모노파우(철이소말토시드착염)(0.834g/2ml) 1*1*1</li> <li>-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1*2*4</li> <li>-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 1*6*1</li> <li>- 신선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1*2*2</li> </ul>	<p>- 동 건은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상병 등으로 체외금속고정술 후 수혈과 함께 철이소말토시드착염 주사제를 투약한 사례로, 대체가능한 급여약제가 있으며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4.8.5.)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교통사고로 환자의 수술부위 세척·소독 목적으로 투여된 타우로리딘 주사제 인정여부
-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타우로리딘 주사제는 국소적 또는 광범위 복부(복막염) 수술의 감염 예방목적의 보조치료, 뼈와 연조직 손상, 흉막강 농양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ATC 코드분류 및 약제급여목록표 상 급여로 등재된 대체약제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외국 가이드라인,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국내 임상연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술부위 감염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이용한 절개부위 세척은 권고하지 않고, 유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리식염수, 베타딘 등과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수술부위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사용이 바람직함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62세            [사고일자] '22.8.1.            [진료일자] '23.11.26. ~ 12.12.            [상병명]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폐쇄성),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 골절불유합(가관절증, 아래팔) 등</p> <p>[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1*0.5*1</li> <li>- 가관절수술(상완골 전완골 허타골) 1*1*1</li> <li>- 골이식술 1*0.5*1</li> <li>- 골편절제술 1*1*1</li> <li>- (주사료) 삼진타우로리딘주사2%(5g/250mL) 1*1*1</li> </ul> </div>	<p>- 동 건은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폐쇄성) 등 상병으로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 시 타우로리딘 주사제를 사용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남자/30세            [사고일자] '24.4.13.            [진료일자] '24.5.28. ~ 6.5.            [상병명] 중족(골)의 상세불명 관절의 탈구, 발의 췌기뼈의 골절(폐쇄성)</p> <p>[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료) 사지골절정복술[복합골절포함]-1*1*1</li> <li>- (주사료) 삼진타우로리딘주사2%(5g/250mL) 1*1*1</li> </ul> </div>	<p>- 동 건은 중족(골)의 상세불명 관절의 탈구 등 상병으로 사지골절정복술 수술 시 타우로리딘 주사제를 사용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상 해당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4.8.5.)

##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척추 MRI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54세 [사고일자] '24.6.24. [진료일자] '24.6.25. ~ 6.26.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p>(2024.6.25.) ·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 1*1*1</p> <p>- (2024.6.26.)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흉추-일반-촬영료 등 1*1*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촬영료 등 1*0.5*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흉추-일반-판독료 1*1*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판독료 1*0.5*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한 경우-1개추가 1*1*1</p>	<p>- 동 건은 요추 통증으로 타기관에서 시행한 방사선 촬영 결과 요추 골절이 의심되어 수상 2일차에 요추 CT를 촬영하고, 수상 3일차에 흉·요천추 MRI와 맥동파순서열 1개 추가 촬영한 사례임.</p> <p>-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타기관과 동기관의 사고 이전 방사선 촬영 비교 상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명확한 진단을 위해 요추 CT를 시행한 것은 인정함. 그러나, 요추 CT상에서도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시행한 흉·요천추 MRI와 맥동파순서열 1개 추가 촬영은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남자/46세 [사고일자] '24.5.7. [진료일자] '24.5.9.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청구내역]</p> <p>-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촬영료 등 1*1*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판독료 1*1*1 -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한 경우-3개추가 1*1*1</p>	<p>- 동 건은 하지의 위약감, 오른쪽 비골부 통각과민, 꼬리뼈의 통증을 호소하여 수상 3일차에 요천추 MRI와 맥동파순서열 3개 추가 촬영한 사례임</p> <p>-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환자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이전 척추후궁절제술 한 기왕력이 있어, 기왕증의 악화 등으로 요천추 MRI는 인정하나 맥동파순서열 추가 촬영은 시행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42세 in car TA                      [사고일자] '23.3.6.                      [진료일자] '24.6.19.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관장애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추-일반-촬영료 등 1*1*1</li>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추-일반-판독료 1*1*1</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23년 3월 수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요천추 MRI를 촬영 후, '24년 6월 요통과 양측 다리 저림 증상으로 수상 68주차에 요천추 MRI를 재촬영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13개월 이상 진료공백이 있는 점,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첫 요천추 MRI 촬영 시와 현 청구 시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변화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요천추 MRI는 인정하지 않음.</li> </ul>
<p>[환자] 남자/61세 운전자 TA(승용차 주행 중 화물차가 측면 추돌)                      [사고일자] '24.6.11.                      [진료일자] '24.6.12. ~ 6.21.                      [상병명] 열린 두개내상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럼증 및 어지럼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추-일반-촬영료 등 1*1*1</li>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추-일반-판독료 1*1*1</li> </ul> </li> <li>- (2024.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흉추-일반-촬영료 등 1*1*1</li> <l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판독료 1*1*1</li> </ul> </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요통과 하지 불편감으로 수상 9일차 요천추 MRI를 촬영하고, 경부 통증과 상지 불편감으로 수상 10일차 인접부위인 경추 MRI를 연속으로 촬영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날을 달리하여 인접 부위를 검사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요천추 및 경추 MRI는 150%로 인정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4.9.24.)

### Ⅲ [한외과] 심사현황 및 '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 ■ 2025년 심사현황 [한외과]



※ 각년도 12월까지 청구기관 수

#### ■ 2025년 심사현황 [한외과]

- 2025년 심결건수는 12,967천 건으로  
⇒ '21년 대비 14.5% 증가
- 2025년 심결 총 진료비는 1조 6,972억 원으로  
⇒ '21년 대비 29.9% 증가
- 2025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한  
한방 의료기관은 14,690기관으로  
⇒ '21년 대비 0.1% 증가

#### ■ 20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 추나요법
- 첩약
- 약침
- 한외과 다중시술 동시 시행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 안내 > 순번 41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V [한의학] 심사기준 및 공개심의사례

### ■ 주요 심사기준

-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원)
버-1	13010	한방 첩약(1첩당) 주: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6,690
버-2	13020	한방 탕전료(1첩당)	670
키-100		한방 관련 의약품 주: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실구입가
	92011	가. 복합엑스제	
	92012	나. 한방과스	

\* 버-1 '주' 사항은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허-1	93011	약침술 주: 1.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112.09
	93013	2.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한다.	
	93012	3.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허-2-1		한방물리요법	
		주: 1.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FT)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4.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 수기요법은 1일 2종 실시 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한다.	
	93023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1일당]	23.43
	93026	나.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52.82
	93027	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IFT)	52.82
	93028	라. 경추견인	95.17
	93029	마. 골반견인	92.55
	93030	바. 도인운동요법 [1일당]	159.67
	93031	주: 1.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93032	사. 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 주: 1. 근육 손상 등으로 발생한 통증이나 장애에 대하여 해당 압통점, 경혈, 경근을 대상으로 마사지요법 등을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57.94
93033	2.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하-70-1		온냉경락요법	
	93024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주. 같은 날 허-2-1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4장 하-70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93025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주. 경피경근온열요법 '주'항과 동일	

○ 추나요법 진료수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하-71		추나요법 주: 1.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40710	가. 단순추나 주: 1.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52.43
	40720	나. 복잡추나 주: 1.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426.19
	40721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40730	다. 특수(탈구)추나	653.29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표3]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시 수가 산정 방법	<p>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의뢰한 의료기관 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진료 의뢰 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뢰하며, 아래 2.의 진료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아니함</p> <p>2. 의뢰받은 의료기관 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나. 진찰료는 입원 진료 중인 해당 상병과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p> <p>3. 청구방법 가. 상기 1. 및 2.의 의료기관은 진료수가 청구 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청구함</p>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2.12.1. 진료분부터 적용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추나요법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p>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인정 횟수: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 의료기관은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p> <p>나. 복잡추나 인정 질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에 해당하는 상병</p> <p>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p>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p>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함</p> <p>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함</p> <p>※ 월평균(주평균) 추나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추나요법 청구건수(추나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p>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55호, '19.5.8. 진료분부터 적용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첩약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 범위 및 산정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li> <li>2. 첩약처방 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버-1 한방 첩약 '주'의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첩약 처방내용: 첩약 처방사유, 방제 한약재의 종류 등</li> <li>3.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li> </ol>
약침술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술 인정 범위 및 산정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술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함</li> <li>2. 약침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허-1 약침술 '주 1'의 실시횟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li> <li>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 시 '약침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li> </ol>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4.4.21. 진료분부터 적용

### ■ 주요 심사지침

○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가-2	입원료	<p>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료 심사 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li> <li>2. 단순 통원불편·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li>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li> </ol>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22.5.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분류번호	분류	내용																																																								
가-8	협의진찰료	<p>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 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의과</th> <th colspan="2">한의과</th> </tr> <tr> <th>분류코드</th> <th>분류명칭</th> <th>분류코드</th> <th>분류명칭</th> </tr> </thead> <tbody> <tr> <td>MM010</td> <td>표층열치료</td> <td>40700</td> <td>경피경근온열요법</td> </tr> <tr> <td>MM020</td> <td>심층열치료</td> <td>93023</td> <td>초음파초단파극단파요법</td> </tr> <tr> <td>MM011</td> <td>한냉치료</td> <td>40702</td> <td>경피경근한냉요법</td> </tr> <tr> <td>MM070</td> <td>경피적 전신경자극치료</td> <td>93026</td> <td>경피전기자극요법</td> </tr> <tr> <td>MM080</td> <td>간섭파전류치료</td> <td>93027</td> <td>경근간섭저주파요법</td> </tr> <tr> <td>MM051</td> <td>경추견인</td> <td>93028</td> <td>경추견인</td> </tr> <tr> <td>MM052</td> <td>골반견인</td> <td>93029</td> <td>골반견인</td> </tr> <tr> <td>MM090</td> <td>마사지</td> <td>93032</td> <td>근건이완수기요법</td> </tr> <tr> <td>MM101</td> <td>단순운동치료</td> <td>93030</td> <td>도인운동요법</td> </tr> <tr> <td>MM102</td> <td>복합운동치료</td> <td>93030</td> <td>도인운동요법</td> </tr> <tr> <td>MM300</td> <td>적외선치료</td> <td>40701</td> <td>경피적외선 조사요법</td> </tr> <tr> <td>51040</td> <td>도수치료</td> <td>40710</td> <td>추나요법(단순)</td> </tr> </tbody> </table>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신경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 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신경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 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분류번호	분류	내용
일반사항	-	<p>1.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동일 적용하되,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함</p> <p>※ 주된 치료는 상병관련 주 처치 등을 고려하여 진료내역 기준으로 함</p> <p>2. 다만, 같은 날 이루어진 진료라도 다음의 경우는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 범위에서 제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해당 상병 및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목적의 영상촬영검사 등과 해당 진찰료</p> <p>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해당 진찰료</p> <p>다.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p> <p>*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 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8호)</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23.9.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행 시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하-30 가(1)	구술(직접구) -직접애주구	<p>교통사고 환자(15세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p> <p>2.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p> <p>3.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2호, '20.12.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노-776	<p>체온열 검사 (Thermography) (전신)</p> <p>주: 부위별 수가는 전신의 60%를 산정한다</p>	<p>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p> <p>1) 적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 증후군포함)</p> <p>2) 시행횟수: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p> <p>나. 검사시설</p> <p>1) 공기흐름이 일정한 공간, 태양광 등 차단</p> <p>2) 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 30~75%를 유지</p> <p>다. 검사방법</p> <p>1) 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응 시켜야 함(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p> <p>2) 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p> <p>라. 체온열 검사 시행 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2호, '20.12.1.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 시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버-1	한방첩약	1.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키-100(가)	복합엑스제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97호, '20.12.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환자 입원 시 「하-3」 내지, 「하-8」, 「하-10」 수가 산정방법

분류번호	분류	내용
하-3 하-4 하-5 하-6 하-7 하-8 하-10	안와내침술 비강내침술 복강내침술 관절내침술 척추간침술 투자법침술 레이저침술	<p>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1),(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입원 시 산정할 수 있는 특수침* (하-3 내지 하-8, 하-10)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상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가 동일한 경우)은 특수침 1종을 1일 2회,</li> <li>-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U코드 포함, 진료기록부 참조 사례별 인정)에 특수침 1일 2회 산정 시, 특수침은 최대 2종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p>* 특수침: 하-3 내지 하-8, 하-10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 내림</p> <p>※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li> <li>-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li> </ul>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4호, '22.6.22.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적용기준
버-1	한방첩약 (1첩당)	<p>교통사고 환자(교통사고와 관련된 질환)에게 수상일로부터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 수상일로부터 12주 초과하여 첩약을 투약하는 경우,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사유(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변증포함)),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함.</p> <p>* 환자상태(증상)는 주관적·객관적 상태를 모두 기록해야 함</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 '22.8.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하-71	복잡추나	<p>교통사고 환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에 따른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록을 확인하여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 확인 후 사례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 포함</li> </ul> </li> <li>2. 환자의 상태(변위, 통증부위·정도·양상) 및 복잡추나 시행 부위·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li> </ol>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 '23.1.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허2-1바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 (1일당)1부위	<p>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li> <li>○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li> </ul> <p>※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함</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23.6.1. 진료분부터 적용

## ○ 교통사고 환자에게 동일 날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허-2-1	한방 물리요법	동일 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과 견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23.12.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현-2	골도법검사	<p>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하며, 교통사고 환자에게 골도법검사 시행 시 구체적인 기록(검사 시행 사유, 환자 평가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 적응증: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가)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 및 손상 등으로 야기된 사지 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                      나) 전신적 또는 최소 3개 이상의 관절운동제한을 초래하는 질환 (예: 다발성 골절 및 탈구,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2) 시행횟수: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p> <p>나.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와 중복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24.6.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분류번호	분류	내용
호-1	경근무늬측정검사	<p>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4주 초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 골절상병은 제외함                      2) 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계획 시 1회, 치료 후 평가 시 1회 인정 (다만, 검사 간격은 4주 초과해야 함)</p> <p>나. 검사시설                      1) 대상자는 측정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 거리 확보해야 함                      2)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함</p> <p>다.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함</p> <p>*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환자 초기 평가 시 통증 점수(VAS 또는 NRS)가 유지되거나 증가                      ** 판독결과: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기재(예: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p>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1호, '25.10.1.진료분부터 적용

## ■ 공개심의사례

☞ 공개심의사례 조회: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급여기준 > 심사기준 조회

### ○ 경상환자의 장기진료 및 다종 진료내역 인정여부

구분	결정사항
1. 외래 장기내원	-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간의 한의과 관련 심사 및 분쟁심의회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을 참조하여 진찰 및 시술, 처치 등의 진료내역을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이후는 주 1회 인정
2. 침, 구, 부항 3술 동시 시술 시 심사방안	- 3술 동시 시술 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초기 3주 이내는 침, 구, 부항 3술 모두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침술은 인정하되 구술과 부항술은 각각 주 2~3회 인정
3. 교통사고환자에게 신기허 비기허 상병 (U코드)하 일률적으로 산정된 1일 침술 3종 인정 여부	- 급성기의 신기허, 비기허 상병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보기 어려운 바, 침술 3종은 침술 2종만 인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주된 침술 1종만 인정함('17.11.13 공개)
4.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이완수기요법 동시 시행 시 인정여부	- 같은 한방수기요법의 범위로 보아 동시 산정 시 1종만 인정
5. 침전기자극술과 동시 산정된 한방물리요법	- 침전기자극술 또는 전자침술과 동시에 청구된 한방물리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근중주파요법 등) 조정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심사 자문위원회 (한의과) (공개심의사례: '15.7.13.)

○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추나요법과 동시 시행한 약침술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54세                      [상병명]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수상일] '16.5.27.                      [진료일자] '16년 6월 7회 외래 내원 (6/1,2,15,16,27,28,29)                      [청구내역]                      한방 첩약(1첩당) 1*2*10                      경혈침술(2부위이상) 1*1*7                      투자법 침술 1*1*7                      침전기자극술 1*1*7                      부항술(자락관법) 1*1*2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1*1*3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2                      약침술(2부위 이상) 1*1*5                      (6/1,15,16,27,28)                      한방물리_근건이완수기요법(2부위)                      1*1*7(6/1,2,15,16,27,28,29)                      한방물리-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1*7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7</p>	<p>○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추나요법과 약침술은 치료기전과 목적이 달라, 질병의 정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동일 날 동시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보편·타당한 적정진료를 고려하여 추나요법과 약침술 1부위까지만 인정하기로 함</p> <p>- 동 건은 외래에서 경·요추의 염좌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경·요추에 단순추나와 경·요추 및 어깨 등에 약침술(2부위이상)을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p> <p>- 추나요법과 약침술은 치료기전과 목적이 달라, 질병의 정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동일 날 동시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 등 검토결과 추나요법과 약침술 2부위이상 동시 실시는 보편·타당한 적정진료로 보기 어려운 바 단순추나와 약침술 1부위까지만 인정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2.6.22.)

## ○ 진료내역 참조 소아에게 투여된 첩약

청구내역	결정사항
[환자] 남자/6세 [사고일자] '13.8.5. [진료일자] '13.8.5. ~ 8.16. (2일 내원)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 두통 [청구내역] - 버1 한방 첩약(1첩당)/가미온담탕 1*2*10	○ 만 6세의 환아 연령 비교 한약제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 ④항 소아의 투여량 참조하여 성인용량의 1/2 용량으로 인정함  1. 만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6개월 이상 만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1세 이상 만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7세 이상 만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심사 자문위원회 (한의과) (공개심의사례: '13.12.12.)

## ○ 중복으로 처방되거나 수상 수개월 후 처방된 첩약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환자] 여자/52세 In car TA(후미접촉) [사고일자] '16.5.14. [진료일자] '16.5.19. ~ 5.21. (외래 2일) [상병명] [청구내역] - 버1 한방 첩약(1첩당)-당귀수산 (5/19 ~ 5/29) 1*2*11 - 버1 한방 첩약(1첩당)-갈근탕 (5/21 ~ 5/31) 1*2*11	- 진료기록부 및 의사소견서 상 가미당귀수산은 요통에 대한 처방이며 우측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갈근탕을 추가하여 처방하였다고 하나, 첩약은 1일 2첩, 1회 10일 이내 투약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여 병용투여 기간의 첩약은 1일 2첩만 인정함
[환자] 남자 / 80세 보행자 TA [사고일자] '14.11.26. [진료일자] '16.4.19. ~ 4.29. (외래 2일) [상병명]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청구내역] - 버1 한방 첩약(1첩당)- 소시호탕 (4/19) 1*2*10 - 버1 한방 첩약(1첩당)- 소시호탕 (4/29) 1*2*10	-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수상 후 1년 5개월 경과하여 두통과 타박상으로 처방된 소시호탕 첩약은 사고와 관련이 없고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한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불인정함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심사 자문위원회 (한의과) (공개심의사례: '16.8.30.)

○ 수상일 및 진료내역 참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사고와 인과관계 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37세 In car TA(후방추돌)                      [사고일자] '15.4.12.                      [진료일자] '17.6.20. ~ 6.30. (외래 6일)                      [상병명]                      목 및 몸통의 상세불명 후유증, 자동차사고의 후유증                      [진료기록부]                      - '15.4.13.~ 4.28.(타병원 의과 외래11회) 이후                      2년 2개월간 의료기관 진료 없음                      - '15.12월 출산</p>	<p>- '15년 4월 후방추돌사고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외래 11회 내원하여 물리치료 받았으며 이후 치료내역 없이 '15년 12월 출산함</p> <p>- 수상 후 2년 2개월이 경과된 '17년 6월 목 굴곡 시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척약(당귀수산) 10일분, 침, 약침, 물리치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p> <p>- 사고 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상환자였으며 2년이나 경과하여 발생한 경추통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통증으로 교통사고 상병의 재발 또는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불인정함</p>
<p>[환자] 여자/59세 보행자 사고                      [사고일자] '15.1.23.                      [진료일자] '17.9.11. ~ 9.26. (외래 6일)                      [상병명]                      요천추 골절, 절구의 골절, 항강(項強)                      [청구내역]  <span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척약: 당귀수산 2*10 (9/11)</span>                      [진료기록부]                      - '15.1.23. ~ 4.11.(의과 80일 입원)                      - '15.4.18. ~ '16.7.27.(지속적 내원)</p>	<p>- '16년 7월까지 외래에서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받고, 1년간 진료내역 없음</p> <p>- 사고 후 2년 이상 경과 되었으나 복합골절 중상환자로 복합골절 후유증 범주로 사료되어 수상일 참조 진료내역은 주1회 인정하되, 척약(당귀수산)은 효능·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7.11.13.)

## ○ 협약과 동시 투여된 복합엑스산제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50세 Out car TA            [사고일자] '17.3.18.            [진료일자] '17.3.20. ~ 4.1. (입원 13일)            [상병명]            경요추 염좌 및 긴장, 두통, 수면장애, 손목, 무릎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버1 한방 협약(당귀수산) 1*1, 2*19            - 키100 복합엑스산제            (시용탕) 2*13            (건각) 2*10</p>	<p>- 한의원에 13일간 입원하여 매일 당귀수산 협약과            함께 두근거림과 불안 증세에 시용탕, 근육통            및 두통 증상에 건각을 병용 투여한 사례임</p> <p>- 당귀수산 협약과 건각 병용투여는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중복투여로 보아 주된 처방 1종만            인정하며, 입원 당일 두근거림과 수면장애            증상에 투여된 시용탕은 타당하나 협약 처방 시            추가 증상에 대한 기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 2일째부터 병용 투여된 시용탕은            불인정함</p>
<p>[환자] 여자/52세 In car TA            [사고일자] '17.3.18.            [진료일자] '17.3.22. ~ 4.4. (입원 14일)            [상병명]            경요추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청구내역]            - 버1 한방 협약(당귀수산) 1*1, 2*19            - 키100 복합엑스산제(반하사심) 2*1,            4*1</p>	<p>- 수상 후 타 병원 진료내역은 없으며 수상            4일째 경요추 염좌 및 긴장, 기능성 소화불량            상병으로 동 한의원에 14일간 입원하여 입원            당일부터 당귀수산 협약 투여 중 입원 2일째와            퇴원 당일 소화불량 증상에 청역(복합엑스산제)            병용 투여한 사례임</p> <p>-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소화불량            증상에 청역 단기처방은 타당하므로 인정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17.9.19.)

○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실시한 경근무늬측정검사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32세                      [사고일자] '25.3.14                      [진료일자] '25.5.2.                      [상병명] 경추·흉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수상 8주 차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시행한 사례임</li> <li>- 수상일로부터 4주 초과 후 검사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인정함</li> <li>- 다만, 경근무늬측정검사 청구 시 VAS 또는 NRS 점수 및 통증양상,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함</li> </ul>
<p>[환자] 여자/68세                      [사고일자] '25.3.9.                      [진료일자] '25.4.22.                      [상병명] 기타 경추간판장애, 경추·흉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수상 11주 차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재시행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의 최초 검사 치료계획에 유의미한 소견이 없어 기존 치료 유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타당성 없는 재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li> </ul>
<p>[환자] 여자/44세                      [사고일자] '24.11.27                      [진료일자] '25.5.16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경추, 흉추, 요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수상 24주 차 경근무늬측정검사 최초검사 시행 후 수상 25주 차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재시행한 사례임</li> <li>- 논의 결과, 최초 검사 후 4주 이내 시행한 재검사를 통해 신체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충분한 치료간격 없이 4주 이내 시행한 재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li> </ul>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31세 [사고일자] '25.2.27. [진료일자] '25.4.23.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경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환자] 여자/53세 [사고일자] '24.11.19. [진료일자] '25.4.23.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기타 경추간판장애,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p>	<p>- 동 건은 수상 23주 차에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시행한 사례임 - 사례4와 사례5는 검사 시행사유 및 치료 계획이 동일하며, 이는 환자별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일률적 기재로 판단하여 인정 하지 않음</p>
<p>[환자] 남자/40세 [사고일자] '25.3.22. [진료일자] '25.4.21.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검사료) 경근무늬측정검사 1*1*1</p>	<p>- 동 건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수상 5주 차 경근무늬 측정검사를 시행한 사례임 - 논의 결과, 신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자세로 시행한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5.9.18.)

○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20회 초과 시행된 하71 추나요법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49세 In car TA(좌측 후면 충돌)                      [사고일자] '20. 6. 17.                      [진료일자] '20.7.13.~7.31.                      (외래9일: '20.7/13,15,16,20,22,24,27,29,31)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40720 추나요법-복잡추나                      1*9                      [영상진단검사결과]                      L-spine MRI('20.6.26.)                      1. Mild diffuse bulging discs at L3-4-5-S1 joints.                      2. small marginal spurs at vertebral bodies.</p>	<p>- 동 환자는 좌측 후면충돌 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동 기관에서 15일간 입원, 이후 외래통원 치료하며 단순추나 8회, 복잡추나 21회 시행하였음</p> <p>- 소견서, 추나시술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등 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추나요법 20회 초과 시행에 대해 심의한 결과 추나시술기록지 상 초진 시 평가가 VAS 10, ROM BAD로 일률적 기재 되는 등 환자 상태 평가기록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의 VAS 및 ROM 제한 여부와 향후 추가 추나치료 횟수 등을 소견서로 제출하였으나 소견서에 언급된 통증변화 및 관절가동 범위등 환자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계획이 경과기록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나요법 20회 초과 치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12.14.)

## ○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실시한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18세 조수 In car TA            [사고일자] '21. 7. 1.            [진료일자] '21. 8. 20.(외래초진)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명치통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20031 경락기능검사-양명경 1*1            [주호소] 요통, 우측 팔 통증, 경추부 통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근골격계 주상병에 부상병으로 명치통증을 기재하여 외래 초진에 양명경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한 사례임</li> <li>-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명치통증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및 검사결과가 향후 치료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동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li> </ul>
<p>[환자] 남자/58세 운전자 In car TA (좌회전 중 추돌, 차가 한바퀴 돌면서 고가로 올라가서 나무에 부딪힘)            [사고일자] '21.8.2.            [진료일자] '21.8.11.(외래 초진)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청구내역]            - 20032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1*1            [주호소] 右경추-견관절-주관절 통증, 사고 초반에는 요통, 좌 슬통 있었으나 현재는 증상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근골격계 주상병에 부상병으로 U코드 (혈어증, 간양상항증)를 기재하여 외래 초진에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한 사례임</li> <li>-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교감신경 항진 및 자율신경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 예후 및 회복기간 파악에 도움을 받고자 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및 검사결과가 향후 치료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동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li> </ul>
<p>[환자] 여자/31세 운전자 in car TA (상대차량과 본인차량의 좌측 충돌)            [사고일자] '21.7.29.            [진료일자] '21.8.19.(외래 초진)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편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20032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1*1            [주호소] 좌측안지손가락과 허리통증이 심함 뒷목 결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근골격계 주상병에 부상병으로 상세불명의 편두통을 기재하여 외래 초진에 양명경 경락기능검사를 실시한 사례임</li> <li>-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두통 등 어혈증상이 보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및 검사결과가 향후 치료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동 검사를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1.11.15.)

○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동시 시행한 견인치료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54세 운전자 In car TA (조수석 탑승,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일자] '21.6.20.                      [진료일자] '21.8.2/3/5/13/14/20.(외래 6일)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40720 추나요법-복잡추나 1*1*6                      - 93028 한방물리요법-경추견인 1*1*6</p>	<p>-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복잡추나 및 경추견인을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p> <p>-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 치료를 동일 날 동시 실시는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려우며,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동일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인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은 인정하고, 견인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여자/45세 운전자 In car TA(운전석 탑승,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일자] '21.7.9.                      [진료일자] '21.8.8/11/13.(외래 3일)                      [상병명] 기타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                      - 93030 한방물리요법-도인운동요법 (1일당)-1부위 1*1*3,                      - 93028 한방물리요법-경추견인 1*1*3</p>	<p>- 동 건은 외래에서 기타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도인운동요법 및 경추견인을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p> <p>-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치료를 동일 날 동시 실시는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려우며,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동일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인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은 인정하고, 견인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1.12.24.)

○ 동일 날 동일(유사)상병에 대하여 외래에서 실시한 의·한과의 협진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44세 운전자 In car TA(조수석, 주차 중 상대차가 조수석과 뒷자리 중간 충돌) [사고일자] '21.8.27. [진료일자] '21.9.2/3/4/6/7/8/10.(외래 7일) [상병명] (한의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p><b>(한의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7</li> <li>- 변증기술료 1*1*2</li> <li>- 한방관련약품-한방파스 1*6*1</li> <li>- 경혈침술(2부위이상)(풍지, 견정) 1*1*7</li> <li>- 척추간 침술(대추) 1*1*7</li> <li>- 침전기자극술 1*1*7,</li> <li>- 약침술(1부위) 1*1*1</li> <li>- 약침술(2부위이상) 1*1*5</li> <li>-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1*7</li> <li>-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7</li> <li>-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7</li> <li>- 추나요법-단순추나 1*1*1</li> </ul> <p><b>(의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진-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1*1*7</li> <li>-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 1*1*7</li> <li>- 심층열치료[1일당] 1*1*7</li> <li>- 간섭파전류치료[ICT] 1*1*7</li> </ul>	<p>○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p> <p>○ 자동차사고 환자가 동일 날 동일(유사)상병에 대하여 외래에서 실시한 의·한과의 협진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동일 날 동일 상병으로 의과와 한의과 외래진료를 각각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li> <li>-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단순·반복되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과 진료내역(진찰료 및 물리치료)은 인정하지 아니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2.1.28.)

○ 경미상병에 진료내역 참조, 지연입원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32세 In car TA(주행 중 추돌사고) [사고일자] '22.6.4. [진료일자] '22.6.7. ~ 6.17 (입원 11일)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10</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주행 중 추돌 사고로, 수상 4일차에 타기관 내원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11일간 입원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및 지연입원의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 바, 전체 입원기간을 외래 통원으로 조정함</li> </ul>
<p>[환자] 여자/28세 In car TA(택시 조수석 측 뒷자리, 신호대기 중 후방추돌) [사고일자] '22.6.4. [진료일자] '22.6.7. ~ 6.14. (입원 8일)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5 - 상급병실료-1인실 1*1*2 -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입원료 1*1*2</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뒷좌석 탑승자로 신호대기 중 후방추돌 사고로, 수상 4일차에 타기관 내원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8일간 입원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수상 4일차 지연입원이나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 뇌진탕 증후군 증상의 지속 및 통증양상에 따른 처치내역이 진료기록부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원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전체 입원기간을 인정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2.8.25.)

## ○ 진료기록부 및 입원환자 관리형태 등 참조, 입원 적정성 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21세 운전자 In car TA(조수석) [사고일자] '22.4.12. [진료일자] '22.4.13.~4.26. (입원 14일) [상병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p> <p>[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p>- 한의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13</p> </div>	<p>○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함</p> <p>○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변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대처를 하여야 함</p>
<p>[환자] 남자/24세 In car TA(택시승객, 조수석 뒷자리, 전면부 충격) [사고일자] '22.4.20. [진료일자] '22.4.21.~27. (입원 7일) [상병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p> <p>[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p>- 한의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6</p> </div>	<p>- 동 기관은 환자상태 변화,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즉시 환자를 관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적·구조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입원 환자에 대한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확인되지 않는 바, 해당 기관의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4.10.)

○ 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장기입원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24세 운전자 In car TA(조수석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일자] '22.1.30.                      [진료일자] '22.2.2. ~ 20. (입원 19일)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청구내역]                      -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등급 간호관리료적용 4인실 입원료 1*1*18</p>	<p>- 동 건은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로, 추간판장애 상병을 동반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19일간 입원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통증 등 증상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기록이 미비하고 MRI 결과가 경미하여 입원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                       - 따라서,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의 입원을 인정하고, 이후 외래 통원으로 조정함</p>
<p>[환자] 여자/71세 In car TA(조수석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일자] '22.1.21.                      [진료일자] '22.1.22. ~ 2.11. (입원 21일)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청구내역]                      -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적용 4인실 입원료 1*1*13                      -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 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7</p>	<p>- 동 건은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로, 추간판장애 상병을 동반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21일간 입원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통증 등 증상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기록이 미비하여 입원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                       - 따라서,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의 입원을 인정하고, 이후 외래 통원으로 조정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2.6.10.)

## ○ 경미상병 등에 진료내역 참조, 입원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아/5세 In car TA(조수석 뒤, 주행 중 추돌)            [사고일자] '22.6.11.            [진료일자] '22.6.12. ~ 6.19. (입원 8일)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청구내역]</p> <p>-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5인실 입원료            [내,소,정신과] 1*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주행 중 추돌 사고로, 수상 다음날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8일간 입원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VAS, NRS등 객관적 경과기록은 미비하나, 두통, 어지러움, 현훈 관련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소아 및 수상 다음날 입원 등 고려하여 입원일로부터 3일까지의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 기간은 외래 통원으로 조정함</li> </ul>
<p>[환자] 남자/27세 In car TA            [사고일자] '22.6.7.            [진료일자] '22.6.7. ~ 6.20 (입원 14일)            [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대            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p>-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인실 입원료            1*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In car TA로 수상 당일에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14일간 입원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의 기록이 미비하여 입원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li> <li>- 따라서,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수상일로부터 5일까지의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 기간은 외래 통원으로 조정함</li> </ul>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53세 In car TA(택시 뒷좌석 탑승)                      [사고일자] '22.7.5.                      [진료일자] '22.7.8. ~ 7.20. (입원 13일)                      [상병명] 손목 및 손의 기타 명시된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p> <p>[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p>- 한방병원, 병원, 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                              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 1*1*12</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뒷좌석 탑승자로 급정거 중 왼쪽 손목을 짚는 사고로, 수상 4일차에 손목 및 손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 상병으로 13일간 입원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연부조직 부분 손상이 확인되고, 추가 진통제 투여 내역이 있으나, 환자상태에 대한 경과기록이 미비하여 입원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li> <li>- 연부조직 손상 등 고려하여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의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기간은 외래 통원으로 조정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2.8.25.)

## ○ 진료공백 등 진료내역 참고,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29세 운전자 In car TA(운전자, 주행 중 전방추돌)            [사고일자] '21.4.28.            [진료일자] '21.11.20. (동 기관 초진)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혈침술(2부위이상) 1*1*1</li> <li>- 투자법침술 1*1*1</li> <li>- 침전기자극술 1*1*1</li> <li>-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1*1*1</li> <li>- 약침술(2부위이상) 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주행 중 전방추돌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수상 초 타 기관 내원하여 한방시술 및 물리치료 받음. 이후 6개월간 치료내역 없이 지내다 수상 후 7개월경 목, 허리통증으로 동 기관 외래 내원한 사례임</li> <li>- 진료기록부 등 경상상병으로 연령 및 장기간의 진료공백을 고려할 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아니함</li> </ul>
<p>[환자] 남자/44세 In car TA            [사고일자] '19.9.15.            [진료일자] '21.12.13. (동 기관 재내원)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혈침술(2부위이상) 1*1*1</li> <li>- 투자법침술 1*1*1</li> <li>- 침전기자극술 1*1*1</li> <li>- 부항술(건식부항) 1*1*1</li> <li>- 약침술(2부위이상) 1*1*1</li> <li>- 추나요법(단순추나) 1*1*1</li> <li>-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In car TA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수상 후 1년5개월경까지 동 기관 및 타 기관 내원하여 신경차단술 및 한방치료 받음. 이후 10개월간 치료내역 없이 지내다 수상 후 2년 3개월경 목, 허리통증으로 동 기관 외래 내원한 사례임</li> <li>-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경상상병으로 장기간의 진료공백을 고려할 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아니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2.8.25.)



-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시행한 한방 정신요법(이정변기요법) 인정여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주’항 등에 따라 정신과 환자에게 한방 정신요법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조사과정을 통한 정신질환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진단의 근거, 치료의 적응증, 치료방법, 환자의 반응 및 평가 등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함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34세 운전자 In car TA(운전석,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일자] '23.2.16.            [진료일자] '23.2.17./21./22 (외래 3일)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간기울결증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허101가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1*1*3</div>	<p>- 동 건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외래(한방재활의학과) 내원하여 이정변기요법 총 3회 시행한 사례임</p> <p>-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상병 및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이 전건 동일하여 한방 정신요법(이정변기요법)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p>[환자] 남자/29세 In car TA(조수석, 주행 중 측면추돌)            [사고일자] '22.10.28.            [진료일자] '23.2.3. (외래 1일)            [상병명] 척추협착(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간기울결증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허101가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1*1*1</div>	<p>- 동 건은 척추협착(요추부) 등 상병으로 외래(한방재활의학과) 내원하여 이정변기요법을 시행한 사례임</p> <p>-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상병 및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이 전건 동일하여 한방 정신요법(이정변기요법)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4.10.)

○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한방 검사 2종 및 한방 정신요법 2종 동시 시행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41세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의한 후방추돌 [사고일자] '22.12.13. [진료일자] '22.3.16., 3.22., 3.29.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떨림, 자극과민성 및 분노, 심담허겁증, 상세불명의 수면장애</p> <p>[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3.16.)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 1*1*1 자율훈련법 1*1*1 맥전도검사-4차원 맥 영상검사 1*1*1 경락기능검사-수면양경 1*1*1</li> <li>- (2023.3.22.)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 1*1*1 자율훈련법 1*1*1</li> <li>- (2023.3.29.)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 1*1*1 자율훈련법 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어지럼증, 떨림, 자극과민성 및 분노, 심담허겁증, 수면장애 상병으로 내원하여 한방검사(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2종 및 한방 정신요법(오지상승위치료법, 자율훈련법) 2종을 시행한 사례</li> <li>-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진단의 근거 및 기록이 충실하여 한방 정신요법 시행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일 날 시행한 한방 정신요법 2종은 보편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려움. 이에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인 오지상승위치료법만 인정하고 자율훈련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아울러, 불안과 떨림 증상으로 자율신경계 상태와 맥파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시행한 한방 검사 2종은 모두 인정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10.10.)

-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진단의 타당성 및 한방 정신요법의 적정여부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일반적으로 외상성 사건에 노출 후 관련증상(사건과 관련된 침습적 증상, 회피, 인지 및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각성과 반응의 심한 변화)이 1개월 이상이며,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하여야 진단될 수 있음(※출처: PTSD 진단기준(DSM-5))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32세 보험자 TA [사고일자] '23.4.2. [진료일자] '23.6.15., 6.19., 6.22. 6.30.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이소골의 불연속성 및 탈구, 두개저의 골절(폐쇄성)</p> <p>[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6.15.)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 1*1*1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1*1*1</li> <li>- (2023.6.19.)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 1*1*1</li> <li>- (2023.6.22.)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 1*1*1</li> <li>- (2023.6.30.)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 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상병으로 내원하여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및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를 시행한 사례임</li> <li>- 정신과적 개인력조사는 인적사항, 주증상, 현병력과 과거병력, 성격, 감각 및 인지 상태/사고과정, 개인습관, 생체기능, 전형적인 일상생활, 체질적/팔강적 속성, 개인력/가족력, 평가, 문제점 순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작성하여야 하나(※근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교육자료),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 결과, 정신과적 개인력조사를 포함한 진단의 근거 및 기록이 미비, 치료시간 및 환자의 반응·평가 등도 확인되지 않음. 이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 시행한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및 개인정신치료(오지상승위치료법)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li> </ul>
<p>[환자] 여자 / 25세 트럭 정면 추돌 [사고일자] '23.6.26. [진료일자] '23.6.30. [상병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문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문의 염좌 및 긴장, 두근거림</p> <p>[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6.30.) 개인정신치료(경자평지요법) 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두근거림 상병으로 내원하여 개인정신치료(경자평지요법)를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진단의 근거 및 기록이 미비하고, 치료시간 및 환자의 반응·평가 등도 확인되지 않음. 이에, 두근거림으로 진단하고 시행한 개인정신치료(경자평지요법)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li> </ul>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여자/39세 In car TA                      [사고일자] '23.4.22.                      [진료일자] '23.6.19., 6.29.                      [상병명]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타 근통(여러부위)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p>- (2023.6.19.) 개인정신치료(지언고론요법) 1*1*1                          - (2023.6.29.) 개인정신치료(지언고론요법) 1*1*1</p> </div>	<p>- 동 건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병으로 내원하여 개인정신치료(지언고론요법)를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진단의 근거 및 기록이 미비하고, 치료시간 및 환자의 반응·평가 등도 확인되지 않음. 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시행한 개인정신치료(지언고론요법)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p>
<p>[환자] 남자/9세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일자] '23.4.22.                      [진료일자] '23.4.26.                      [상병명] 심담허겁증,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p>- (2023.4.26.)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 1*1*1</p> </div>	<p>- 동 건은 심담허겁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를 시행한 사례임</p> <p>- 진단 및 치료행위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충실하고, 교통사고로 인하나 심리적·정서적인 변화가 확인됨, 유·소아에게 심담허겁증으로 시행한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는 적정 진료료로 보아 인정</p>
<p>[환자] 남자/64세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일자] '23.2.27.                      [진료일자] '23.6.13., 6.17., 6.20.                      [상병명] 급성 스트레스 반응,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p>- (2023.6.13.) 개인정신치료(경자평지요법) 1*1*1                          - (2023.6.17.)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 1*1*1                          - (2023.6.20.) 개인정신치료(경자평지요법) 1*1*1</p> </div>	<p>- 동 건은 급성스트레스 반응 상병으로 수상 16주에 내원하여 개인정신치료(경자평지요법, 이정변기요법)를 시행한 사례임</p> <p>- 교통사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 시점이 부합하지 않음. 이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하고 시행한 개인정신치료(경자평지요법, 이정변기요법)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음</p>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10.10.)

○ 수상일 및 진료기록 참조, 1년 11개월째 시행중인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 인정여부

청구내역	결정사항
<p>[환자] 남자/70세 보행자사고(좌측 발등을 승용차가 왕복 지나감)            [사고일자] '21.6.10.            [진료일자] '23.5.1., 8., 19., 29.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5.1.)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 1*1*1</li> <li>- (2023.5.8.)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 1*1*1</li> <li>- (2023.5.19.)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 1*1*1</li> <li>- (2023.5.29.)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 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건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병으로 진단 후 수상 3주차부터 평균 주1회 내원하여 1년 11개월째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를 시행한 사례임</li> <li>- 진단의 근거 및 기록이 미비하고, 환자의 주호소 외 치료행위에 대한 기록이 전부 동일함</li> <li>- 이에,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li> </ul>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3.10.10.)

## ■ 청구착오 사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관련]

청구내역	조정내역	조정사유
<p>93012 약침술(2부위이상) 1*2*1 → 외래환자 약침 2부위 시행 후 일투 2로 청구</p>	<p>약침술(2부위이상) 1*1*1 → 일투 1만 인정</p>	<p>허-1 약침술 주2.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p> <p>■ 93012 약침술(2부위이상) 수가 는 2개 부위 이상 시술 행위에 대한 수가이므로 2부위 시행 시 일투 “2” 입력 시 전산조정</p>



## V [치과] 심사현황

### ■ 2025년 심사현황 [치과]



※ 각년도 12월까지 청구기관수

- 2025년 심결건수는 31,324 건으로  
⇒ '21년 대비 2.2% 감소
- 2025년 심결 총 진료비는 77억 원으로  
⇒ '21년 대비 23.7% 증가
- 2025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한  
치과 의료기관은 1,948기관으로  
⇒ '21년 대비 25.3% 증가

#### ○ 치과 행위 중 다빈도 조정 10항목

연번	분류코드	분류명칭	연번	분류코드	분류명칭
1	U2232	치석제거[1/3약당]	6	U2233	치석제거[전악]
2	U2240	치근활택술[1/3약당]	7	U1010	치주소과술[1/3약당]
3	U2221	치주치료후처치[1구강1회당]	8	UA411	임시레진상부분틀니[추가1치당]
4	U4430	치조골성형수술[1치당]	9	UA405	임시레진상부분틀니[3치기준]
5	UA401	임시레진상부분틀니[3치기준]	10	U4981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

\* 조정사유: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왕증 내역으로 치석제거 등

## VI [치과] 심사기준

### ■ 주요 심사기준

-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분류번호	코드	분류	비고
키-26	VJ010	완전도재전장관 All Ceramic Crown 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제1절 치과보철 중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진료원칙] 및 [보철원칙 및 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10,000원
초-42	UZ042	교합안전장치	9,839.31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치아보철	치아보철 산정기준	치아보철비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_제1절 치과보철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보철료 금액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425,000	카10	포스트(기성품)	110,500
카2	3/4금관	318,41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677,29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510,00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1,179,78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347,65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카5	국소의치(백금기금주조)(1악)	1,718,470	카14	임시레진관	26,710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70,000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502,380

※ 금액: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 치조골 성형수술 및 치은절제술 관련 급여기준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차43 치조골성형 수술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나. 수가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 방법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차104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차104 치은절제술 [1/3약당] 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2022.4.1.시행)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일반사항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p>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급여대상: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p> <p>나. 인정기준</p> <p>1)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함 다만, 치료를 실패할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같음함</p> <p>2)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 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p>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2022.5.1.시행)

○ 치간고정술 관련 수가산정방법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차33 치간고정술	치아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에 따라 차34가 잠간고정술 [1약당]-3치 이하 또는 차34나 잠간고정술 [1약당]-4치 이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 [1약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전위된 치아의 고정 및 치수 재료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전위된 치아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치수재료를 한 경우 고정술 (차33 치간고정술 [1약당] 또는 차34 잠간고정술 [1약당]의 소정점수와 치수치료(차10 발수 [1근관당], 차11 근관세척 [1근관 1회당] 및 차12 근관충전 [1근관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 잠간고정술 관련 수가산정방법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차34 잠간고정술	치아탈구로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과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치아탈구에 차34 잠간고정술 [1악당]과 차29 교합조정술 [1치당]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차34 소정점수의 100%, 차29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 치주소파술 수가산정방법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차101 치주소파술	차101 치주소파술 [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차101 치주소파술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차22가 치주치료수치치 [1구강 1회당]-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로 준용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차101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차101 소정점수를 산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주요 안내사항



I.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83
II.	심사참고자료	86
III.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중계서비스	89
IV.	자동차보험 데이터 제공서비스	93
V.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한 자료 제출 등	94
VI.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101
VII.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108
VIII.	약침 관리시스템	118

## I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개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목적:**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그 이의제기 사유가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함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이의제기등)

-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제28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규칙 제6조의5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규칙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심사관련 자료 제출 등)

- ① 심사평가원은 제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진료수가의 심사 및 이의제기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환자에게 발행된 진료비계산서 사본 등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사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동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웹(web):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진료비청구 > 이의제기신청
  - 이의제기서 작성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파일첨부 후 제출
- 이의제기프로그램: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
  -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이의제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의제기서 자료생성 및 제출
  - 보험회사는 자사 시스템에서 이의제기서 자료를 생성하여 심평원이 제공하는 연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서면: 의료기관만 가능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제기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제출

#### ○ 이의제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하단의 이의신청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 •자동차보험 이의제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설치됩니다.



## ○ 이의제기 의학적 증명 책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구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서 열거한 요양급여로서 그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어느 요양급여가 위 법령,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2.11.29. 선고 2007두24746 판결>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그 요양급여가 그 항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07.11.8. 선고 2006누16382 판결>

## II 심사참고자료

### ■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자동차보험 알림방 > 순번 192 (심사참고자료 제출 관련 안내)

유형	분류번호	수술명	참고자료
견관절 수술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견관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li> <li>- 수술전 영상및 결과지 (X-ray, CT, MRI 등)</li> <li>- 관절경 영상 (관절경 수술 시행한 경우)</li> <li>※ 재치환술 사유관련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 첨부</li> </ul>
	자-71-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	
	자-71-1-가	인공관절재치환술-견관절	
	가-91	건, 인대 피하단열 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자-94	건박리술	
	자-93-1	건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슬관절 수술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슬관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li> <li>- 수술전 영상및 결과지 (X-ray, CT, MRI 등)</li> <li>- 관절경 영상 (관절경 수술 시행한 경우)</li> <li>※ 재치환술 사유관련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 첨부</li> </ul>
	자-71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슬관절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	
	자-82-1	반월판 연골 봉합술	
	자-82-2	반월상 연골 이식술	
	자-88	십자인대성형술	
	자-89	십자인대접합술	
가관절 수술	자-62	가관절수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li> <li>- 수술전 영상 및 결과지 (X-ray, CT, MRI 등)</li> </ul>
유형	분류번호	수술명	참고자료
고관절 수술	자-70-가	사지관절절제술-고관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li> <li>- 수술전 영상 및 결과지 (X-ray, CT, MRI 등)</li> </ul>

유형	분류번호	수술명	참고자료
	자-71	인공관절치환술	- 관절경 영상 (관절경 수술 시행한 경우) ※ 재치환술: 사유관련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 첨부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척추수술	자-46	척추고정술	-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 수술전 영상 및 결과지 (X-ray, CT, MRI 등) - 골밀도 검사결과지(DXA 이용: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자-47	경피적척추성형술	
	자-47-1	경피적척추후궁골풍선복원술	
	자-49	추간판제거술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정형외과 수술	자-60-1	체외금속고정술(E-F)	-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 수술전 영상 및 결과지 (X-ray, CT, MRI 등) - 관절경 영상 (관절경 수술 시행한 경우) - 개방성 골절의 경우 환부사진 (있는 경우) ※ 사지접합수술(수술 전, 중, 후 환부사진)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자-58-1	사지접합수술	
중재적 방사선 시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 수술전 영상 및 결과지 (X-ray, CT, MRI 등) - 시술영상
	자-660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	
	자-664	혈관색전술	
신경외과 수술	자-46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 수술전 영상 및 결과지 (X-ray, CT, MRI 등)

유형	분류번호	수술명	참고자료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정술	
흉부외과 수술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정복술	-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 수술전 영상 및 결과지(X-ray, CT, MRI등)
신경 차단술	다-210-나	척추-경막외조영	- 시술기록지, 시술영상(AP / LAT 등)
	바-25-자	후지내측지	- 시술기록지, 시술영상(AP / OBL / LAT)
레이저 반흔 성형술	키-14	레이저반흔성형술	- 수술기록지, 병변부위 사진(크기 확인) - 기수술내역 있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부
특수영상	S항	CT, MRI, PET	- 시행사유 확인 가능한 진료기록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검사결과지
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 전체		-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 소견서(발행이 된 경우)
	요양병원 특정기간		- 환자평가표, 폐렴 및 패혈증 점검표 등
	요양병원 정액		- 환자평가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장기입원		-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 영상검사 결과지(CT, MRI 등) - 진단서·소견서(발행이 된 경우)
	입원전체		
	경상환자 입원		
	외래 장기내원		- 외래진료차트(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 영상검사 결과지(CT, MRI 등) - 진단서·소견서(발행이 된 경우)
골대체제	-	-	- 수술기록지 - 수술 전 영상 및 결과지(X-ray, CT, MRI 등) - 골밀도 검사결과지(DXA 이용)

### III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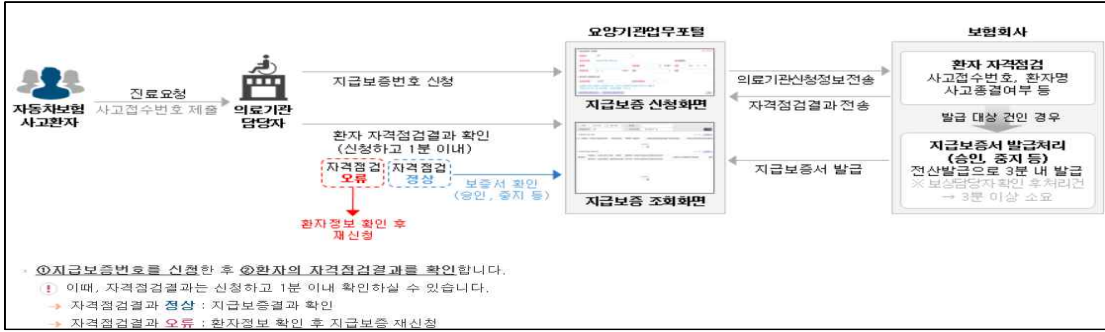
#### ■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란?

의료기관이 유선망(전화, FAX)을 통해 개별 손해보험사와 처리하던 교통사고 환자 지급보증서 발급업무를 심평원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 API, QR)을 통해 상시 신청 및 결과 조회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서비스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 청구	청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정보화지원	원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제도안내</li> <li>진료비청구안내</li> <li>이의제기 안내</li> <li>심사자료 제출안내</li> </ul> </li> <li>정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구관련코드조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기준조회</li> </ul> </li> <li>신청및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제출 진행과정</li> <li>내용신청 목록표</li> <li>내용이력제 구입목록표</li> <li>내용이력자료 구입목록표</li> <li>내용이력자료사건안내시스템</li> <li>조제제약 목록표</li> <li>내용이력특신고결과조회</li> <li>약형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li> <li>검산항구 신청</li> <li>발급서비스 신청 및 변경</li> <li>통보서 신청</li> <li>심사자료제출</li> <li>요양병원환자방과표조회</li> <li>한방병원요법 장비신고 접수</li> <li>한방병원요법 장비신고 결과조회</li> <li>협약 차방 조제 내역 목록 및 조회</li> </ul> </li> <li>보험사 개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사 공자사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보험 알림방</li> </ul> </li> <li>진료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행과정</li> <li>일부오류</li> <li>이의제기신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실</li> <li>교육</li> <li>서식자료실</li> </ul> </li> <li>우리병원 맞춤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지원정보</li> <li>세부 통계 정보</li> <li>미청구자료조회</li> <li>진료비 청구기관 신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보증번호 신청</li> <li>지급보증번호 발급내역조회</li> <li>지급보증 QR발급</li> </ul> </li> </ul>									

- ☞ (포털서비스)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 지급보증번호 신청 / 지급보증 QR발급 / 지급보증번호 발급내역 조회
- ☞ (API서비스) 심평원이 개발·제공하는 오픈API를 활용하여 진료정보시스템(EMR/OCS)에서 지급보증 처리

○ 지급보증 신청·발급 프로세스  
\* 요양기관업무포털 기준 예시



- ① (수진자)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 ② (보험회사등) 사고접수 및 접수번호 발급
- ③ (수진자)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요청
- ④ (의료기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환자성명, 사고접수번호 등” 입력 후 지급보증 신청
- ⑤ (심평원) 해당 보험회사에 지급보증 실시간 요청
- ⑥ (보험회사등) 지급보증 신청사항 자격점검 결과 송신 (1분 이내)
- ⑦ (의료기관) 자격점검 결과 확인
- ⑧ (보험회사등) 지급보증 발급 결과 송신
- ⑨ (의료기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지급보증 처리 결과 확인

○ 의료기관 대상 서비스 화면

지급보증번호 신청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 지급보증번호 신청

- 중계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보험회사로 상시 지급보증 신청 가능, 발급이력 실시간 조회
- (기존 방식) 보험회사와 유선(전화, FAX)를 통한 업무처리 유지

지급보증 QR발급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 지급보증 QR발급

- 의료기관의 지급보증 QR 코드 발급, 인쇄 가능
- 지급보증 QR 신청 기능을 적용한 보험회사로 상시 지급보증 신청 가능

※ 9개 보험회사 적용 완료(2026. 5. 14.)

### 지급보증번호 발급내역조회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 > 지급보증번호 발급내역 조회

- 의료기관이 신청한 지급보증 정보에 대한 자격점검결과, 지급보증서의 발급이력 조회
- 보험회사등 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 출력 및 저장

###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및자료제출 >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 지급보증정보 신청점검결과, 발급결과에 대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알림톡, 문자메시지) 지원

#### ○ 교통사고환자 자격점검 연계

- 청구오류의 대부분이 사고환자 자격관련 (J1, J3) 발생
-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통해 적재된 지급보증정보를 자격정보로 활용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한 자격사항 사전 확인
- 사전점검 및 단순청구오류(AFK) 점검을 통한 자격 관련 오류(T1) 점검 및 수정

○ 기대효과

· 의료기관

- (업무 편의성) 보험회사등에 대한 지급보증서 신청 업무 통합·일원화
- (업무 전산화) 유선(전화, FAX)을 통해 이루어지던 지급보증신청 업무 전산화
- (정보 신뢰성) 지급보증정보(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

· 심평원·보험회사등

- (청구오류 감소) 지급보증정보 정확성 향상으로 자격관련 청구오류 감소
- (업무효율성 향상) 청구데이터 품질향상에 따른 심사 및 지급업무 효율성 향상
- (민원 감소)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통한 업무 자동화로 민원 감소



## V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한 자료 제출 등

### ■ 비용산정 목록표

○ 비용산정 목록표 신고(1/3)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 제출 > 비용산정 목록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 '위 해당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check > 행추가 활성화 버튼 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진료수가(별위) 인정범위

1. 교통사고관계에 대한 진료수가(별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함.
2.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해 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치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 진료수가(신의료기술등) 인정범위

1. 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에서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자외우 새로운 치료법(신의료기술 등)을 자동차사고관계에 시연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외부의 결정신청서 접수된 행위 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함.
2.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가격(별위)는 실제비용, 치료제는 실구입가를 기재한 비용산정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비용산정 목록표 신고(2/3)

○ 비용산정 목록표 신고(3/3)

## 2025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8 [참조란] 상세 명칭 및 내용 입력**  
-92011[한방파스], 92012[복합엑스제]  
-상급병실료 및 기타 재료대 경우

**11** 예 아니오

**9** [확인] [보험신청 목적표] [이전페이지]

**10** [보험신청 목적표]

**증빙자료 파일첨부**  
- 거래명세서, 가격의 산출근거 및 내역 자료 등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경기도 합천시 혁신로 141번길 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번호 2088)  
COPYRIGHT © 2017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 목록표 접수 진행과정

○ 신청 및 자료 제출 진행과정 확인

**신청 접수 진행과정**

접수일: 2014-02-04 ~ 2014-04-12 | 민원유형: 전체

조회결과: 27

접수번호	민원유형	접수일시	재접수횟수	처리상태	상세 화면
2015<31000062	비중상설목적표(자보)	2016-04-04 17:43:06	0	작성 중	
2015<02000018	비급여치료재료구입목적표(자보)	2015-12-17 15:01:39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2015<02000015	비급여치료재료구입목적표(자보)	2015-12-11 08:02:27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2015<02000014	비급여치료재료구입목적표(자보)	2015-12-10 17:36:57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2015<02000013	비급여치료재료구입목적표(자보)	2015-12-10 14:22:04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2015<30000022	비급여약제 구입내역목적표(자보)	2015-12-07 17:12:09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2015<31000039	비중상설목적표(자보)	2015-12-07 17:04:04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2015<02000012	비급여치료재료구입목적표(자보)	2015-11-24 15:54:55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2015<31000037	비중상설목적표(자보)	2015-11-24 15:50:20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2015<30000019	비급여약제 구입내역목적표(자보)	2015-11-24 15:47:09	0	신청/제출 완료	조회

■ 비급여목록

○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1/3)

자율차보험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

구입내역신고서 | 전체 | 집수일차: 2018-01-01 ~ 2018-01-01 | 집수번호: [ ] | [ ]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

집수번호	구분	집수번호	신원번호	신원자성명	신고건수	현행건수	불인정건수	연태건수
2018-01-01	비급여목록	105		김기영	1	0	0	
2018-01-01	비급여목록	109		김희영	4	0	0	
2018-01-01	비급여목록	101		김기영	7	5	1	1

Copyright © 2017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644-2000

○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2/3)

자율차보험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

구입내역신고서 | 전체 | 집수일차: 2018-01-01 ~ 2018-01-01 | 집수번호: [ ] | [ ]

비급여목록 신고결과 조회

집수번호	구분	집수번호	신원번호	신원자성명	신고건수	현행건수	불인정건수	연태건수
2018-01-01	비급여목록	105		김기영	1	0	0	
2018-01-01	비급여목록	109		김희영	4	0	0	
2018-01-01	비급여목록	101		김기영	7	5	1	1

Copyright © 2017 b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1644-2000



## ■ 통보서 신청

### ○ 통보서 이메일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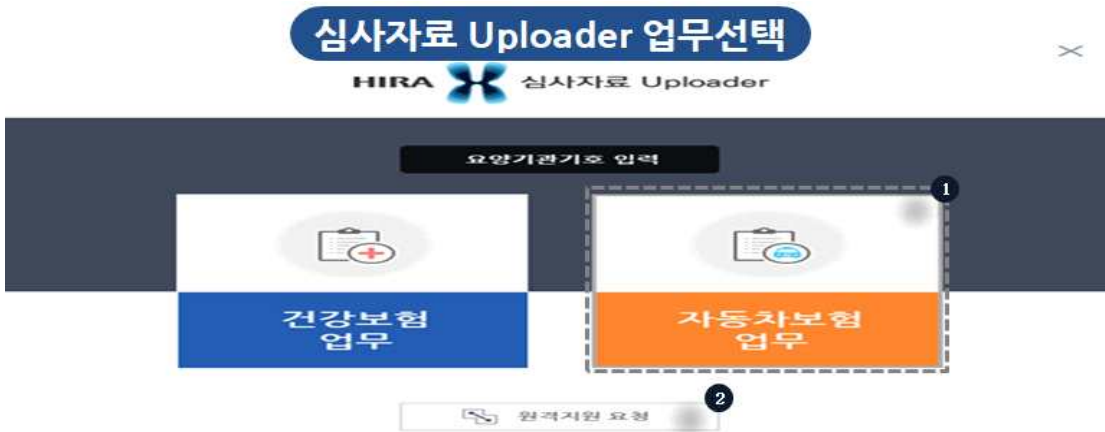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 제출 > 통보서 신청  
- 접수증, 심사결과통보서 등 심평원에서 제공되는 통보서를 이메일로 제공

통보서 유별	시작일	종료일	배고	현경
간호수가심사결과통보서(자동차보험)	2003-05-23	9999-12-31	신청상태	재가
간호수가심사결과통보서(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간호수가심사결과통보서(자동차보험)	2003-05-23	9999-12-31	신청상태	재가
간호수가심사결과통보서(자동차보험)	2003-05-23	2005-09-04	재가상태	신청
간호수가심사결과통보서(자동차보험)	2003-05-23	2005-09-04	재가상태	신청
1차심사 지연통보(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심사보완자료요청통보(자동차보험)	2013-04-20	2013-04-20	재가상태	신청
A.F.X연대제출통보(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A.F.X조정내역통보(자동차보험)	2006-12-20	9999-12-31	신청상태	재가
의뢰제거 보완자료 요청서(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의뢰제거결정 지연통보(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의뢰제거결정서(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의뢰제거완결통보(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의뢰제거접수증(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한자시행문서(자동차보험)			재가상태	신청

## ■ 영상자료제출시스템

○ 개요: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편(CD)등 심사참고자료 제출 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심사자료제출안내 > 심사보완자료 업로더 설치파일 다운로드



- ① 심사자료 Uploader에서 업무(건강보험업무/자동차보험업무) 선택 기능 선택
- ② 프로그램 사용상의 문제 발생 시 원격지원 요청 가능

○ 첨부방법



- ① 조회일자, 접수번호, 입원/외래 조건에 따른 접수번호 목록 및 명세서 목록 조회
- ② 의료영상/일반과일을 첨부하기 위해 파일탐색기 및 끌어다놓기(Drag&Drop) 기능 사용
- ③ 즉시전송/예약전송/다량 전송 기능 제공
- ④ 한번의 로그인으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업무 가능(업무전환)

## VI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 ○ 추나요법 등록화면 경로(1/2)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 심사평가정보&진료의뢰회송 →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로그인

#### ○ 추나요법 등록화면 경로(2/2)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https://ef.hira.or.kr>)) →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추나내역 등록

○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을 통한 추나등록 삭제방법 및 타병원 진료확인 방법 안내

-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을 통한 삭제 방법 안내

①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평가정보&진료의뢰회송 → 심사평가제출시스템 로그인

②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ef.hira.or.kr) →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추나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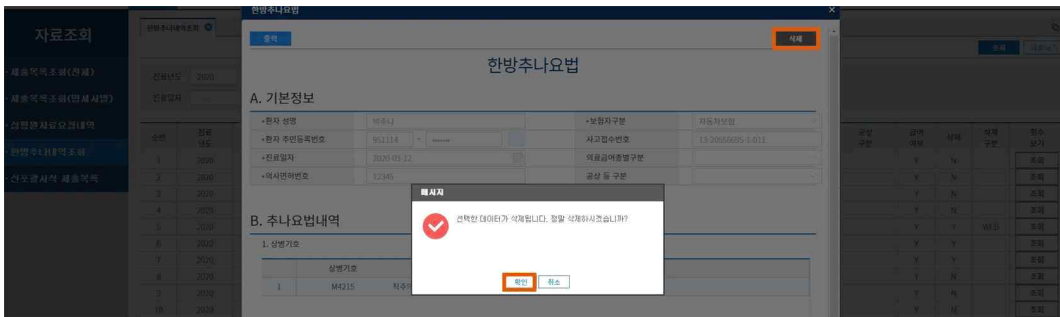
③ 환자 정보 조회 → 환자 정보 입력



④ 삭제하려는 진료일자 확인 → 줄 클릭 시 팝업 생성

순번	진료 년도	진료일자	제출일자	환자명	생년월일	보험자구분	사고접수번호	의료급여종별	공상 구분	급여 여부	삭제	삭제 구분	접수 보기
1	2020	2020.08.11	2020.08.11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N		조회
2	2020	2020.08.08	2020.08.08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N		조회
3	2020	2020.06.25	2020.06.25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Y		조회
4	2020	2020.06.24	2020.06.24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3434343434			Y	Y		조회
5	2020	2020.05.13	2020.05.13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Y		조회
6	2020	2020.04.21	2020.04.21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Y		조회

⑤ 우측 상단의 삭제 버튼 클릭



⑥ 삭제 N → Y로 변경 확인

순번	진료 년도	진료일자	제출일자	환자명	생년월일	보험자구분	사고접수번호	의료급여종별	공상 구분	급여 여부	삭제	삭제 구분	접수 보기
1	2020	2020.08.11	2020.08.11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N		조회
2	2020	2020.08.08	2020.08.08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N		조회
3	2020	2020.06.25	2020.06.25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Y		조회
4	2020	2020.06.24	2020.06.24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3434343434			Y	Y		조회
5	2020	2020.05.13	2020.05.13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Y		조회
6	2020	2020.04.21	2020.04.21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Y		조회
7	2020	2020.04.21	2020.04.21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Y	AGENT	조회
8	2020	2020.04.20	2020.04.20	박주나	1995.11.14	자동차보험	13-20556695-1-011			Y	Y		조회

⑦ 삭제 완료 후 재등록, 10분 후 보완청구 가능

-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을 통한 해당 진료일자에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제출된 추나내역 확인 안내
  - ①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평가정보&진료의뢰회송 → 심사평가제출시스템 로그인
  - ②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추나내역 등록 → 환자정보 조회
  - ③ 환자정보 조회 후 ‘추나요법 실시횟수’ 안내문구 클릭

종합 안내    심사서식정보    평가서식정보    **진료의뢰·회송**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추나내역 등록

### 한방추나요법

**A. 기본정보**

·환자 성명	박추나	·보험자구분	사동차보험
·환자 주민등록번호	951114 - ..... 7	·사고접수번호	13-20556695-1-010
·진료일자	2021-06-16	·의료급여종별구분	선택
·의사면허번호		·공상 등 구분	선택
·추나요법 실시횟수	사고접수번호(13-20556695-1-010) 치료기간 중 추나요법 실시횟수 : 0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 제출된 있음)		

**B. 추나요법내역**

- ④ 추나요법 실시현황 팝업창 내 ‘해당 진료일자 추나요법 내역’ 확인

한방추나내역 등록

### 한방추나요법

**A. 기본정보**

·환자 성명	박추나	·보험자구분	사동차보험
·환자 주민등록번호	951114 - ..... 7	·사고접수번호	13-20556695-1-010
·진료일자	2021-06-16	·의료급여종별구분	선택
·의사면허번호		·공상 등 구분	선택
·추나요법 실시횟수	사고접수번호(13-20556695-1-010) 치료기간 중 추나요법 실시횟수 : 0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 제출된 있음)		

**B. 추나요법내역**

1. 상병기호

상병기호
------

2. 추가코드

추가코드
------

**박추나 추나요법 실시현황**

해당 진료일자 추나요법 내역 (총 1회)			
순번	진료일자	우리병원여부	당일진료존재여부
1	2021.06.16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고접수번호별 추나요법 내역 (총 0회)			
순번	진료일자	우리병원여부	당일진료존재여부
No Data			

\*우리병원여부 : 요양기관기호, 사고접수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닫기

- ☞ 해당 진료일자(2021.6.16.)에 우리 병원에서 해당 사고접수번호(13-20556695-1-010)로 제출한 추나요법은 없지만, 타 병원에서 다른 사고 접수번호로 제출한 내역 있는 경우

- ※  우리병원여부: 요양기관기호, 사고접수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 당일진료존재여부: 해당 진료일자에 제출된 추나내역 있는 경우(사고접수번호 무관)

■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내역

□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추나요법 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보완

- 현행 같은 날 사고접수번호가 동일한 건만 조회 →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건도 확인 가능
  - (예시) 우리 병원에서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제출한 추나요법은 없지만, 타 병원에서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제출한 내역 있는 경우

박추나	추나요법	실시현황
X		

해당 진료일자 추나요법 내역			(총1회)
순번	진료일자	우리병원여부	당일진료존재여부
1	2021.6.16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우리병원여부: 요양기관기호, 사고접수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 ☑ 당일진료존재여부: 해당 진료일자에 제출된 추나내역 있는 경우(사고접수번호 무관)
- 추나요법 등록 시 해당 진료일자에 이미 등록된 건이 있을 경우 알림 수정
  -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등록된 추나요법이 있는 경우 정보 알림

진료일자 기준 1일 1회 산정 횟수를 초과했습니다.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 제출 건 있음)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의료기관 삭제를 현 시점에서 3개월 전까지 삭제 가능하도록 연장 (의료기관 삭제가능 건에 한함)

종 전	현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일로부터 <u>2개월 전</u> 자료(진료일 기준)</li> <li>- 청구 전: 모든 정보 삭제 가능</li> <li>- 심사결정 이후: 불능 · 반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일로부터 <u>3개월 전</u> 자료(진료일 기준)</li> <li>예시) 2022.11.28. 삭제 가능 건은 2022.8.27. 진료분 부터임</li> <li>- 청구 전: 모든 정보 삭제 가능</li> <li>- 심사결정 이후: 불능 · 반송</li> </ul>

-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교통사고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시행일: 2021.7.6. 일부터)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자동차보험 알림방 >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 사항 안내” 순번 287번,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 관련 질의응답(수정·보완 안내) 순번 317번 참조

###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관련 질의응답

Q.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A.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할 경우 환자당 연간(사고당) 추나요법 실시횟수(타요양기관 포함)를 조회 관리하고 실시한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해당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됩니다.

Q. 추나요법 진료정보는 언제 전송해야 하나요?

A. 추나요법 진료정보는 진료 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추나요법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전송 가능합니다.

Q. 환자가 타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횟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서 타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횟수를 포함한 환자당 연간(사고당 추나요법 실시횟수)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Q. 추나요법 등록 후 의료기관에서 삭제 가능한가요?

A. 의료기관에서 청구 전까지 추나등록 내역 삭제 가능  
- 불능·반송 건은 심사결정 이후 삭제 가능

삭제 가능	삭제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일로부터 3개월 前 자료 (진료일 기준 93일) 예시) 2022.11.28.에 삭제 가능 건은 2022.8.27. 진료분 부터임</li> <li>■ 청구 전: 모든 정보 삭제 가능</li> <li>■ 심사결정 이후: 불능·반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심사 중인 명세서</li> <li>■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li> <li>■ 진료일 기준 94일이 지난 경우</li> </ul>

Q.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추나요법 등록이 가능한가요?

A. ○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추나요법을 등록 할 수 없음  
- 사고접수번호 착오기재 등 잘못된 정보 삭제 없이 추가 제출 방지  
- 착오 기재된 정보는 삭제 후 제출 가능  
- 추나 요법은 1일당 수가로 수가 산정 및 등록은 한 번만 가능  
○ 추나요법 등록 시 같은 날에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등록된 건이 있을 경우 알림 문구 발생

진료일자 기준 1일 1회 산정 횟수를 초과했습니다.  
(해당 진료일자에 타 사고접수번호 제출 건 있음)

Q. 같은 날에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제출된 추나요법 확인 가능한가요?

A. 추나요법 등록 시 해당 진료일자에 다른 사고접수번호로 제출된 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함

Q. 불능코드 J3-12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A.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명세서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 시 발생  
○ 추나요법 진료정보 등록-적재 시간 차이로 인한 심사불능 발생  
- 자보 system에 진료정보가 적재되는 시간 소요로 10분 이내 청구 시 발생

Q. 93일 이내 진료일로 의료기관에서 삭제 가능한 건이나 ‘해당 건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사유: 심사진행중, 환수대상건 등) 메시지가 뜨는 경우 어떻게 삭제하나요?

- A. ○ 시스템에 추나요법 등록 후 청구프로그램에서 정보(수진자 정보, 사고접수번호 등) 변경 등 정보불일치로 에러 메시지 발생  
- e-form system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삭제 가능  
○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선제 통보하는 J1 불능  
- 심사 중인 명세서로 심사결정까지 기다리거나 반송 요청 필요  
○ 반송 당일 또는 의료기관 요청으로 인한 64 불능 처리 당일  
- 2-3일 경과 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삭제 가능

Q. 추나요법 사전교육 이수 현황 신고 절차

A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클릭 → 신규신고 → 의(약/조산)사 현황 목록에서 “변경” 또는 “신규입사” 클릭 → 자격등록 탭 →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 에서 ‘교육/경력추가’ 클릭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 파일첨부(교수 이수증) 후 “최종제출” 클릭

Q. 추나요법 교육이수 신고 결과 조회 방법

A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에서 확인 가능  
※ 처리완료시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추나요법 등록 내역을 삭제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 (건강보험) 각 본부별 담당자 연락처

구분	연락처	비고
본원	033-739-5635	상급종합병원
서울본부	02-3772-8855, 8891~4	
부산본부	051-630-4001	
대구경북본부	053-750-9420(대표번호)	
광주전남본부	062-605-2895~8	
대전충청본부	042-600-7082, 7091~2, 7083	
경기남부본부	031-290-1376, 1454, 1487, 1495, 1497	
울산경남본부	055-239-7647~9, 7662, 7679	
경기북부본부	031-830-9689	
전북본부	063-249-7950~1	
인천본부	032-830-7422, 7438	
강원본부	033-923-7728, 7729	
제주본부	064-907-8637, 8638	

○ (자동차보험) 담당자 연락처: 033-739-3464 (자보심사1부, 2부)

Q.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 전송 시 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이었으나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송한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삭제하고 변경된 진료정보로 재전송하여야 합니다.

## VII 청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 ■ 청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 청약 처방·조제내역 등록화면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청약 처방·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청약 처방·조제내역 등록 or 조회



## ○ 협약 처방 조제내역 등록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 청구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

협약 처방 조제내역 등록 x

홈 > 자동차보험 > 신청및자료제출 > 협약 처방 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협약 처방 조제내역 등록

### 한방협약정보

- ① 안내
- ② 급여기준
- ③ 알림방
- ④ 자료방
- ⑤ 정보방
- ⑥ 신청및자료제출
- ⑦ 신청·제출 진행과정
- ⑧ 비용신청 목록표
- ⑨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 ⑩ 비급여치료제 구입목록표
- ⑪ 비급여치료제료사건연내시스템
- ⑫ 조제내역 목록표
- ⑬ 비급여약목신고결과조회
- ⑭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⑮ 전산성구 신청
- ⑯ SMS 신청
- ⑰ 통보서 신청
- ⑱ 심사자료제출
- ⑲ 한방관리요법 장비신고 접수
- ⑳ 한방관리요법 장비신고 결과조회
- ㉑ 협약 처방 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협약 처방 조제내역 등록
- 협약 처방 조제내역 조회
- ㉒ 진료비 청구
- ㉓ 우리병원 맞춤형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b>기본정보</b>	보험자구분 자동차보험				
환자성명 ①	보험자구분				
환자주민등록번호 ②	사고접수번호 ⑤				
진료일자 ③	협약처방내역 ⑥				
작성자명 ④					
<b>협약내역</b>					
총투여일수 ⑦	당전유원 ⑨				
상병기호 ⑧	주/부상병 구분				
<b>조제내역</b>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font-size: x-small;">           자체합전 공동이용합전 그외(혼합 등)         </div>				
변종					
협약내역_효능분류	<input type="checkbox"/> 전과 동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head> <tr> <th>한약재명</th> <th>용량(g)</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No Data.</td> </tr> </tbody> </table>	한약재명	용량(g)	No Data.	
한약재명	용량(g)				
No Data.					
처방내역(조성)(g)					

## 가. 기본정보

- ① 환자성명 입력
- ② 환자주민등록번호 입력 YYMMDD (예시: 19801111 (×), 801111 (○))
- ③ 진료일자 입력(협약 처방한 일자) YYYY-MM-DD
- ④ 진료(담당) 한의사명 입력
- ⑤ 사고접수번호 입력
- ⑥ ① 환자성명 ~ ⑤ 사고접수번호 까지 입력해야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협약 내역 확인가능  
- 해당 진료일자 및 사고접수번호별 협약 내역 조회 가능

**신고결과 상세조회**

해당 진료일자 한방첩약 내역

순번	진료일자	투여일수	우리병원여부	당일진료존재여부
No Data.				

사고접수번호별 한방첩약 내역

순번	진료일자	투여일수	우리병원여부	당일진료존재여부
No Data.				

\* 우리병원여부: 요양기관기호, 사고접수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닫기**

나. 첩약내역

- ㉠ 총 투여일수 콤보박스 클릭 > 처방한 첩약 투여일수 클릭
- ㉡ 상병기호 > 돋보기 클릭 > 상병코드 대문자로 입력 > 조회 > 해당 줄 선택 후 더블 클릭 > 주/부상병 구분 선택

**상병기호 조회**

상병코드  코드명  Q 조회

순번	상병코드	코드명칭
1	S60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2	S600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3	S601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4	S602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5	S607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6	S608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7	S609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 ㉢ 탕전유형 > 자체탕전 or 공동이용탕전 or 그 외(혼합 등) 선택

다. 조제내역

1) (변증) ① 돋보기 클릭 > ② 조회 후 조회된 항목에서 선택하여 더블클릭

① 조제내역

변증명 조회

변증통합기호	구분	소분류	세분류
001	육음병증	육음병증	육음병증
002	육음병증	육음병증	풍한증
003	육음병증	육음병증	풍열증
004	육음병증	육음병증	풍습증
005	육음병증	육음병증	한습증
006	육음병증	육음병증	습열증
007	육음병증	육음병증	습열미안삼초증
008	육음병증	육음병증	삼초습열증
009	육음병증	육음병증	양조증
010	육음병증	육음병증	윤조증
011	육음병증	육음병증	열독치성증
012	육음병증	육음병증	열극생풍증
013	육음병증	육음병증	서열상기증

②

2) (첩약명\_효능분류) ① 기관에서 사용하는 첩약명 직접입력 and ② (효능분류) 돋보기 클릭  
③ 조회 > ④ 조회된 항목에서 선택 후 더블클릭

첩약명\_효능분류

①

②

처방내역(조성)(g)

③

첩약명 조회

순번	처방(방제)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1	V0101	해표제	신온해표제
2	V0102	해표제	신황해표제
3	V0103	해표제	부경해표제
4	V0201	사하제	한하제
5	V0202	사하제	윤하제
6	V0203	사하제	윤하제
7	V0204	사하제	공보검시제
8	V0205	사하제	축수제
9	V0301	화해제	화해소양제
10	V0302	화해제	조화근비제
11	V0303	화해제	조화비위제
12	V0304	화해제	치화제
13	V0401	청열제	청기분열제

3) (처방내역(구성)) '전과 동일' 활용 or 신규 입력

- '① 전과 동일' 선택 시 환자의 3개월 내 가장 최근 처방 내역 연동\*

\* 환자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별(타 기관 내역 조회 불가)

. 연동된 내역은 수정불가, 처방 조성 및 용량 변경 시 재 등록

- 신규 입력 시 ② 돋보기 클릭 > 조성조회 팝업 > ③ 한약재명 입력 > ④ 조회 > ⑤ 조회된 한약재명 더블클릭하여 추가 > ⑥ 용량 입력 > ⑦ 저장

※ 한약재 마스터 파일) 자동차보험알림방 → 자동차보험 「처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마스터파일 안내 → 순번 348 참고



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 가능

**자동차보험 협약 진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동차보험 협약 적정 청구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협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하는 의료기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항목	성명, 사고접수번호
수집·이용 목적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환자 진료 정보(처방일수)를 타 기관에 제공하여, 협약 증복 청구 방지 및 적정 청구 도모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협약 처방 조제내역 수정 및 삭제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협약 처방·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협약 처방·조제내역 조회

가. 1) ① 환자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입력 > ② 조회

2) ① 진료기간 설정 > ② 우리병원만 조회 > ③ 조회

나. (수정) 협약 처방·조제내역 조회 > 해당 진료내역 줄 '조제내역' 란 N(임시저장)일 경우 > 해당 진료내역 줄 더블 클릭 > 한방협약정보 화면 팝업 > 수정(한의사 소견 등 수정) >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다. (삭제) 협약 처방·조제내역 조회 > 해당 진료내역 줄 더블 클릭 > 한방협약정보 화면 팝업 > 오른쪽 상단 '삭제' 버튼 클릭 > 조회화면의 '삭제여부'란 'Y'로 변경됨

※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진료건 삭제 필요시, 자보심사운영부 요청 ☎ 033-739-3464

※ 의료기관에서 삭제가 가능한 경우

- ① 조제내역 N(임시저장)일 때
- ② 조제내역 Y일 때: 청구 전, 제출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심사불능·반송건(진료일 기준 93일)



○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조제내역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4. 2. 21.>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조제내역서

① 기관 정보	의료기관기호	의료기관명
② 환자 정보	환자명	생년월일(YYYY-MM-DD)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YYYY-MM-DD)
③ 진료 정보	총 투여일수	항진유형 <input type="radio"/> 자체발진 <input type="radio"/> 공동이용발진 <input type="radio"/> 그체(종합등)
	상병기호	주 부상별 구분 <input type="radio"/> 주상병 <input type="radio"/> 제1 부상병
④ 처방·조제 정보	병종	
	질약명_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g)	<input type="checkbox"/> 정과 등질
	한약재명	등량(g)
⑤ 비 고		
* <input type="checkbox"/> 환자 등의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같이 처방 합의사 소견 (free text 기재내역)		
* 비고 (free text 기재내역)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①기관정보, ②환자정보, ③진료정보, ④처방·조제정보를 모두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2. ②환자정보-환자 생년월일, 진료일자는 YYYY-MM-DD 형식에 맞춰 기재합니다.
3. ③진료정보-총 투여일수는 해당 진료분류의 총 투여일수를 기재합니다.
4. ③진료정보-상병기호는 KOD 코드지침에 따라 주상병 또는 제1 부상병을 기재합니다.
5. ④처방·조제 정보-한약재는 병명을 선택합니다.
6. ④처방·조제 정보-합약명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합약명을 free text로 작성하여, 해당 처방 효능분류를 선택합니다.
7. ④처방·조제 정보-합약명(조성)은 합약명을 구성하는 한약재를 선택하고, 해당 한약재가 없을 경우에는 free text로 작성합니다.
8. ④처방·조제 정보-합약을 구성하는 한약재 단위는 g로 등량합니다.
9. ⑤비고-같이 처방 사유 등 합의사의 소견을 기재합니다.
10. 대표자 서명 및 작성자(발발 합의사)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11. 합약을 구성하는 조성 변경 시에는 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2. 합약 처방·조제내역서는 처방 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박상지(80g/ml) 또는 등질지(80g/ml)

### ■ 협약 처방 조제내역 등록 관련 질의응답

Q.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A.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한 협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협약 처방·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자동차보험 알림방' 게시

○ 의료기관은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당 협약 처방일수(타 요양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필수입력 조건: 진료일자, 환자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Q.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협약 관련 진료정보는 진료 시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협약 진료내역 청구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미전송 시 심사불능).

Q.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협약 청구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협약 처방·조제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경로)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협약 처방·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협약 처방·조제내역 조회에서 기본정보(환자성명, 사고접수번호 등) 입력 후 총 투여일수 확인

Q.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에 전송한 진료정보를 삭제 가능한가요?

A. 의료기관에서 청구 전까지 협약등록 내역 삭제 가능

- 불능·반송 건은 심사결정 이후 삭제 가능

삭제 가능	삭제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일로부터 3개월 전 자료(진료일 기준 93일)</li> <li>■ 청구 전: 모든 정보 삭제 가능</li> <li>■ 심사결정 이후: 불능·반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심사 중인 명세서</li> <li>■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li> <li>■ 진료일 기준 94일이 지난 경우</li> </ul>

Q. 협약 등록 내역을 삭제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 (건강보험) 담당자 연락처 033-739-1556, 1557 (수가개발부)

○ (자동차보험) 담당자 연락처: 033-739-3464 (자보심사1부, 2부)

Q.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협약정보 조회 및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협약진료 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이 협약 관련 진료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를 정보주체(환자)에게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별도의 제출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서식은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협약 처방·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협약 처방·조제내역 등록 화면 상단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24.2.21.) 관련 질의응답 > 순번 349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VIII 약침 관리시스템

### ■ 약침 관리시스템 접속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접속 > 좌측 상단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 ② 인증서 로그인 > ③ 자동차보험 > ④ 신청 및 자료제출 > ⑤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약침 조제내역 신고 or 조회



## ■ 약침 관리시스템 신고결과조회

※ 약침조제내역 접수 완료한 경우만 조회 가능

- (경로) ① 자동차보험 > ②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약침 조제내역 신고 결과조회 > ③ 조회 - ④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더블클릭: 신고결과 상세 조회 팝업 - ⑤ 조제내역서 더블클릭: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 팝업

The screenshot shows the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 web portal.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of '조제내역' (Injection Preparation Records). The table has columns for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자' (Receipt Date), '구분' (Category), '환자성' (Patient Status), '환자성' (Patient Status), '약침내역' (Injection Record), '조제내역서' (Injection Record), '처리상태' (Processing Status), '불량항' (Defective Item), '변경사유' (Change Reason), '변경내역' (Change Record), '변경사유' (Change Reason), and '담당부서' (Responsible Department). The '접수번호' column contains the value '9024<S1000002' and the '접수일자' column contains '2024-02-07'. The '조제내역서' column contains 'N' and '처리 중' (Processing). The '처리상태' column contains '처리 중' (Processing). The '담당부서' column contains '자보심사2팀' (Car Insurance Review Team 2) and '자보심사1팀' (Car Insurance Review Team 1).

## ■ 약침 관리시스템 신고 시 안내사항

- 약침관리시스템 담당자  
→ 자보심사운영부 ☎ 033-739-3461



# 기 타



I. 청구오류 점검	121
II.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다빈도 청구착오 항목 안내	130

## I 청구오류 점검

### ■ 심사불능

○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기준 길이

코드	보험회사등	최소	최대	코드	보험회사등	최소	최대
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	20	23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4	16
02	한화손해보험	11	19	24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15	15
03	롯데손해보험	13	13	25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16	16
04	MG손해보험	15	20	28	배달서비스공제조합	10	10
05	흥국화재해상보험	21	21	30	전국렌터카공제조합	10	10
08	삼성화재해상보험	21	21	41	AXA손해보험	11	11
09	현대해상화재보험	14	23	42	하나손해보험	10	18
10	KB손해보험	10	15	43	신한EZ손해보험	17	17
13	DB손해보험	15	20	45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9	9
17	AIG손해보험 ※ 자격점검 미시행	9	10	69	캐롯손해보험	11	19
21	전국택시공제조합	9	17	9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0	10
22	전국버스공제조합	16	20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순번 373번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기준길이 안내 (2024.8.29.기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부여체계

코드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부여체계	자릿수
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u>2019-123456789-1-001</u> 년      순번      담보 서열	9~20
02	한화손해보험	<u>201902-00001-01-001</u> 년 월      순번      담보 서열	11~19
03	롯데손해보험	<u>2019-12-00001</u> 년 월      순번	13
04	MG손해보험	<u>1909-00-01234-10-001</u> 년 월      고유순번      담보 서열 <u>2019-0000000001</u>	15~20
05	흥국화재해상보험	<u>20190913-12345-10-001</u> 년 월 일      사고      순번	21
08	삼성화재해상보험	<u>20190913-12345-10-001</u> 년 월 일      사고순번      담보 순번 담보: 10(대인), 30(자손, 차상해), 60(무보험)	21
09	현대해상화재보험	<u>1908000001-20-001</u> 년 월      순번(6자리)      담보 서열 <u>130800001-20-001</u> 순번(5자리)	14~23
10	KB손해보험	2019-0000000055	10~15
13	DB손해보험	<u>19-00000001-10-001</u> 년      일련번호      담보 서열	15~20
21	전국택시공제조합	201912345 201912345001 1100200481234 1100200481234001	9~17

2025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코드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부여체계	자릿수
22	전국버스공제조합	<u>07-2019-01-00001-001</u> 지부 년 월 Seg 피해순번	16~20
23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u>2019-12345-1-001</u> 년 일련번호 담보 순번	14~16
24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u>201901001234101</u> 년도 지부코드 시리얼 담보 Seg	15
25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u>2019-12345-1-001</u> 년 일련번호 담보 서열	16
28	배달서비스공제조합	<u>2501140013</u> 연월일 일련번호	10
30	전국렌터카공제조합	<u>1909050001</u>	10
41	AXA손해보험	<u>19-12345678</u> 년 일련번호	11
42	하나손해보험	<u>1909-0001234-1-001</u> 년 월 일련번호 담보 서열	10~18
43	신한EZ손해보험	<u>19090012345-21001</u> 년 월 일련번호 담보번호 피해자서열 담보번호: 11(책임), 44(자손), 74(자상), 51(타차대인), 55(무보상해), 54(타차자손), 80(보장사업)	17
45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보험	<u>190123456</u> 년 일련번호 <u>19G123456</u> 년 정보부장 일련번호	9
69	캐롯손해보험	<u>201902-00001-01-001</u> 년 월 순번 담보 서열	11~19
9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u>2023000001</u> 또는 <u>TRNF000001</u> 년 일련번호 이관 일련번호	10

## II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다빈도 청구착오 항목 안내

## ■ 청구오류 조정현황

○ 2025년 단순청구오류 발생현황

심사조정코드	합계	A	F	K	B	L	U
명세서 건수	2,600,593	2,381,735	176,014	5,353	35,759	839	893
비율(%)	100.0	91.6	6.8	0.2	1.4	0.03	0.03

○ 의료기관 다빈도 청구오류 유형

[A] 금액 산정착오 조정(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 마스터파일 미적용 또는 자체코드의 단가 적용 착오
- 목록표 신고내역과 진료내역의 단가 상이

[F] 구입증빙자료 미제출분 조정

- 목록표 신고누락 또는 변경일자 기재착오 또는 누락
- 비급여코드의 경우 목록표 신고누락 또는 신고단가와 진료내역 단가의 상이

[K] 산정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누락 조정

- 코드구분 적용 착오
- 비급여코드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코드를 청구

[B]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 사용 기준량 초과
- 약제 코드 착오 청구

[L] 검체검사위탁검사, 개방병원 의뢰진료, 위탁진료, 시설 등 공동이용 진료시 실시기관기호 및 검사의뢰일 기재착오 또는 누락 조정

[U]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미기재 조정(의사, 치과의사의 허용범위의 직접조제)

■ 청구오류 사례

- 코드구분 착오에 의한 「K」 조정 사례
  - 보장구 등의 코드구분을 치료재료로 청구오류

코드	분류번호	한글명	코드구분	
			정	오
20242	타24나	목뼈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1(수가)	8(치료재료) 2(준용수가)
20244	타24가	목뼈보조기-필라델피아		
20254	타25라	척추보조기-콜셋		
20330	타33	목발	1(수가)	8(치료재료) 2(준용수가)
VM060	키21	팔걸이		
VM061	키21	슬링-팔걸이		
VM062	키21	슬링-쇄골밴드, 8자형 밴드		
VM070	키22	캐스트 신발		

- 비급여 치료재료 목록표 관련 「F」 조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급여 치료재료는 단일코드로 여러 규격 및 신고단가를 통해 치료재료를 구분하게 됨</li> <li>-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한 단가와 청구단가가 다른 경우 조정</li> </ul> </li> <li>· 발생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급여 치료재료 목록표 제출 BJ1001EM 4,000원</li> <li>- 비급여 치료재료 청구 BJ10012EM(코드오류), 단가 1,251원 ⇒ 일치하는 신고단가 없으므로 F 조정</li> </ul> </li> </ul>
--

## ○ 일투 청구오류 사례

## · 이텍스벤지다민액(1.5g/1000ml) 1병을 100개로 잘못 청구한 예

※ 이텍스벤지다민액(1.5g/100ml) 8,000원('16.1.1. 적용단가), 4,997원('22.1.1. 적용단가)

3. 투약 및 처방전료 [42.26%]		투약일수: 2					
16	1 J2000	입원환자 조제	1,340.	1.	1.	5	6,700
7	3 698500130	237 세르비아캡	84.	1.	2.	1	168
8	3 698500130	237 세르비아캡	84.	1.	3.	4	1,008
29	3 648504251	131 하이몰집안	1,545.	1.	1.	1	1,545
10	3 698500671	231 이텍스벤지	8,000.	100.	1.	1	800,000

## · 듀라겔현탁액(1포 17g) 1포를 17개로 잘못 청구한 예

※ 듀라겔현탁액(17g/포) 255원('17.2.1. 적용 단가)

구분번호	코드	품명	1/11	단가	회차	일부	종류	인정금액	조정금액	변경일	위탁예외	확인	시	TM
16	3 670100121	234 듀라겔현탁		255.	17.	3.	4	52,020						
17	3 670100121	234 듀라겔현탁		255.	1.	3.	1	765						
18	3 670100121	234 듀라겔현탁		255.	1.	2.	1	510						

## ○ 별도 명세서 미작성 청구오류 사례

구분	별도 명세서 작성구분	입원 (내원) 일수	진료일수	진료개시일
보건의료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입원 기간 중 의과·치과·한의과 협의진료분	C	0	협의진료 관련 진료일수만 기재 하되, 실제 입원한 진료과의 진료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실제 입원한 진료과 진료 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 상 최초 협의진료를 실시한 날
타법령(산재·건보 등) 입원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분	K	0	해당 진료 진료일수만 기재	해당 명세서 상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
주된 사고로 입원(외래)진료중 다른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분 ※ 진료개시일이 같은 경우	U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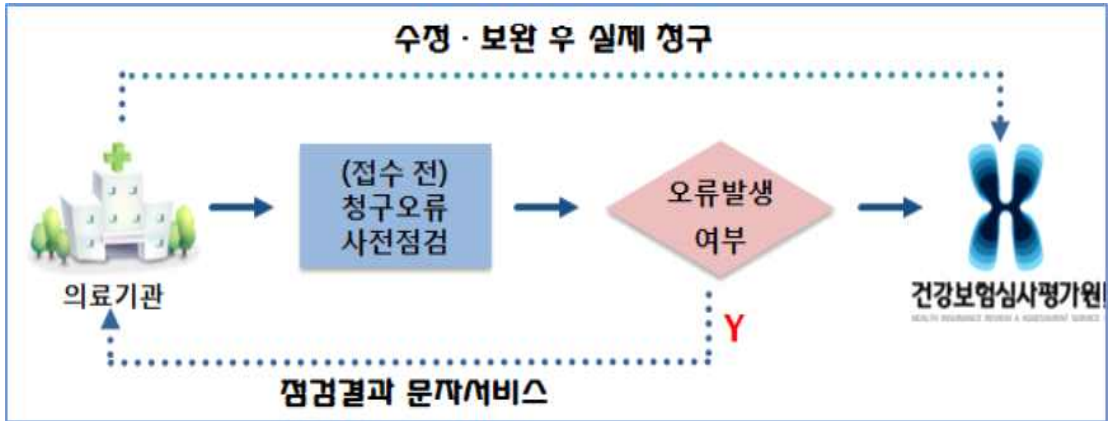
○ 전산점검 기준 청구오류 사례

- J3-12 점검기준 (적용일 2020. 1. 6. 접수분부터)
  - 코드 세부명칭: 추나요법 관리시스템-명세서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
  - 점검 대상: 한방 입원·외래 추나요법 청구 명세서
  - 점검 조건
    - 개인식별번호 & 진료일자 & 의료기관기호는 모두 일치하면서, 사고접수번호가 불일치하는 명세서
    -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건이 없는 명세서
- J3-15 점검기준 (적용일 2024. 4. 21. 접수분부터)
  - 코드 세부명칭: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미등록 또는 기재착오
  - 점검 대상: 한방 입원·외래 한방협약 청구 명세서
  - 점검 조건
    - 협약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건이 없는 명세서(임시저장 상태 포함)
    - 개인식별번호 & 진료일자 & 의료기관기호는 모두 일치하면서, 사고접수번호가 불일치하는 명세서
- J3-16 점검기준 (적용일 2024. 4. 21. 접수분부터)
  - 코드 세부명칭: 협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총투여일수 불일치
  - 점검 대상: 한방 외래 한방협약 청구 명세서
  - 점검 조건
    - 협약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진료일자 별 합산된 총 투여일수와 명세서 투여일수가 불일치하면 불능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란?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접수)하기 전에 수시로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 후 청구하도록 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진료비 청구 전 청구명세서 파일을 진료비청구포털을 통해 사전점검 서비스 시행  
 ※ 청구 전 수시 점검 가능(청구 전이면 기간, 횟수 제한 없음)

○ 사전점검 결과 확인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진료비청구 > 청구오류 > 청구오류 사전점검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진료비 청구와 관련 없으며, 오류결과를 확인 후 반드시 실제 청구를 진행하여야 함

## ■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

·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 항목 추가)

- 사고접수번호 또는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에 대한 상세 내역과 각 보험사의 체계에 맞는 올바른 기재방법 제공



○ 주요신설 항목: T1-01

· 개요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에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T1-01)을 추가하여 자격 관련 불능사유 상세메시지를 신설하여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 자격 사전점검

- T1-01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확인 불가 또는 보증종료일 이후 진료분

※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등 교통사고환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사전점검

## II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다빈도 청구착오 항목 안내

### □ 개요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다빈도 청구착오 항목에 대한 청구방법 안내로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유도

###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장제9조(목록표 등의 제출)

①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증빙 자료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목록표 등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표 등은 진료수가 청구 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한다.

1. 원료약 구입목록표
2. 치료재료 및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3. 자체 조제(제제)약 목록표
4. 비용산정 목록표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다빈도 청구착오 항목

○ 의과

순번	항목	코드구분	내역
1	상급병실료 청구착오	1	수가
2	FULL PACS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미신고	1	수가
3	캐스트신발·슬링 코드구분 청구착오	1	수가
4	비급여 치료재료(자착성(탄력)붕대) 청구착오	8	치료재료

○ 한의과

순번	항목	코드구분	내역
1	상급병실료 청구착오	A	수가
2	약침·약제 조제현황 청구착오	A	수가
3	추나요법 청구착오	A	수가
4	한방물리요법 의료장비 미신고	A	수가
5	한방과스 청구착오	A	수가
6	일회용 부항컵 미신고	H	치료재료

☞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다빈도 청구착오 항목 안내 > 순번 30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단순 청구착오 사례

## ▶ 의과 항목 (4항목)

## 1. 상급병실료 청구착오

## ○ 청구착오 사례

- 사례: 상급병실료의 특정내역 기재형식을 착오 청구하는 경우

코드	한글명	특정내역	
		착오사례	올바른 청구
VA011	상급병실료-1인실 1*1*3	“입원 당시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사용함”	E/20210125/20210128
VA011	상급병실료-1인실 1*1*6	(기재하지 않음)	E/20210706/20210712

## ○ 청구방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1. 청구코드

의과	VA011 상급병실료-1인실	VA012 상급병실료-2인실	VA013 상급병실료-3인실

## 2. 코드구분

의과	1: 수가	2: 준용, 신의료기술등 급여 결정신청건(행위, 치료재료)
	3: 약제	8: 치료재료

## 3. 입원 사유별 코드

사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M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E

## 4. 특정내역 기재방법

-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9(4)	JJ006	X(1)/ccccyyymm/ccccyyymm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수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2. FULL PACS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미신고

### ○ 착오청구 사례

가) 사례1: 의료인력(영상의학과 or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미신고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GB035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FULL PACS) 이용 5매 (단순영상)	2,350	1	1	1	영상의학과 or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미신고

나) 사례2: 의료장비 미신고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GB03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 (FULL PACS) 이용 5매 (단순영상)	780	1	1	1	의료장비 미신고

### ○ 청구방법

- 인력 현황 신고 방법

#### 요양기관 인력 현황 신고 절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ru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신고하는 항목 클릭) → 신규 건은 '신규입사', 기존인력 변경 건은 '변경', 퇴사는 '퇴사신청' 버튼 클릭 → 탭 별로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 작성자 정보 등록 후 하단의 '최종제출'

※ 상세 내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정보마당 참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2021년))

- 주1. 신고 항목: 의료인력 인원수, 의(약/조산)사, 의료기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동위원소 취급인력
2. 의·약사 기본정보 입력 시, 면허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심사평가원 복지부 DB점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확인을 통한 정보 정정 후 신고 진행

## - 의료장비 신고 방법

## 의료장비 신고 절차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ru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신고하는 항목 클릭)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식약처 허가(신고)정보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 팝업 생성) → [식약처 허가(신고)정보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정보] 식약처 허가번호 조회 → 해당장비 번호의 적용버튼 클릭 → [장비등록/수정] (중고장비의 경우 바코드 검색 가능)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기본정보, 허가/제조정보, 구입·판매·설치정보 등 필수항목을 입력 → [파일추가] 제출 서류 첨부 → 작성자 정보 입력 → 장비대분류, 대분류목적, 품목구분 선택 후 조회 → 변경신고 또는 사용구분 클릭 →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주1. 기존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는 '변경신고', 양도·폐기·사용중지·이전은 '사용구분'
2. '변경신고' 클릭 시 수정할 내용 수정 후 임시저장 → 최종제출
3. '사용구분' 클릭 시 (중지)적용일자 입력, 양도 및 폐기 시에는 '인수인'란 입력
4. 상세 내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정보마당 참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2021년))

## - 의료장비(FULL PACS) 신고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일반 장비	1.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3. FULL PACS 장비의 경우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2는 생략가능

※ 상세 내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정보마당 참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

### 3. 캐스트신발·슬링 청구착오

○ 착오청구 사례

가) 사례1: 코드구분 청구착오 조정된 경우

코드 구분	코드	한글명	조정사유
8	VM070	(공란)	코드구분 착오

#### 올바른 청구

코드 구분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1	VM070	캐스트신발	3,000	1	1	1

나) 사례2: 구입증빙자료 미신고 조정된 경우

진료내역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VM070 캐스트신발	4,000	1	1	1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 청구방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별표2)

#### 1. 청구 코드

VM070 캐스트신발	VM061 슬링-팔걸이	VM062 슬링-쇄골밴드, 8자형밴드
-------------	--------------	----------------------

#### 2. 코드구분

의과	1: 수가 3: 약제	2: 준용, 신의료기술등 급여 결정신청건(행위, 치료재료) 8: 치료재료
----	----------------	---

- 캐스트신발·슬링 신고 방법

#### 캐스트신발, 슬링 등 신고 절차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용산정 목록표 → 행추가 → 코드 또는 품명 입력 후 조회 → 제출을 하고자 하는 목록표 코드 체크박스 선택 → 확인 → [작성재 기재 → [비용] 실 구입가 기재 → [적용(신청일)] 청구하는 행위의 진료일을 기준으로 입력 → [참조란] 상세 명칭 및 내용 입력 → 파일추가 → 증빙자료 파일 첨부 (거래명세서, 가격의 산출근거 및 내역 자료 등 첨부) → 접수

※ 접수 후 처리·진행과정은 신청 및 자료제출 진행과정에서 조회

## 4. 비급여 치료재료 청구착오

## ○ 착오청구 사례

가) 사례1: 자착성(탄력)붕대 코드구분 착오 조정된 경우

코드구분	코드	한글명	조정사유
1	BK7102EA	(공란)	코드구분 착오

올바른 청구						
코드구분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8	BK7102EA	3M COBAN 2 LAYER COMPRESSION SYSTEM	46,000	0.07	1	9

나) 사례2: 자착성(탄력)붕대 청구착오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BK7101EA	3M COBAN SELF- ADHERENT WRAP 전규격	800	1	1	1	구입목록표 인정단가 미일치

- 해당 의료기관 구입목록표

(BK7101EA) 3M COBAN SELF-ADHERENT WRAP 전규격 1EA 인정단가: 4,000

올바른 청구						
코드	한글명	단가(원)	1회(투약)	일투	총투	
BK7101EA	3M COBAN SELF-ADHERENT WRAP 전규격	4,000	0.2	1	1	

다) 사례3: 자착성(탄력)붕대 구입증빙자료 미신고로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BK7101DQ	PEHA-HAFT 4CM X 4M	2,200	1	1	1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 청구방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별표2)

1. 코드구분

의	1: 수가	2: 준용, 신의료기술등 급여 결정신청건(행위, 치료재료)
과	3: 약제	8: 치료재료

- 비급여 치료재료 신고 방법

비급여 치료재료 신고 절차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급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 의료기관 현황(작성자, 전화번호 등 기입) 후 행추가 → 코드 입력 후 조회 → 해당 내역 선택 후 확인 → 구입비용, 구입일자 등 상세내역 입력 → 파일추가 →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첨부 후 접수 ※ 비급여 치료재료대 목록의 규정 규격 단위(EA, Roll 등)로 신고 (전규격 치료재료인 경우, '참조란'에 해당 규격 기재)

- 비급여 치료재료 신고 결과 조회 방법

비급여 치료재료 신고 결과 조회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급여 목록신고 결과조회 → 접수일자 또는 접수번호 선택 후 조회 ※ '접수일자' 클릭 시 처리구분 (Y(인정), N(불인정)) 확인 및 불인정 통보문/안내서 확인가능 ※ 처리결과 불인정 시(처리구분 N 불인정 사유(안내문) 확인 후,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 신고 재접수

## ▶ 한의과 항목 (6항목)

### 1. 상급병실료 청구착오

#### ○ 착오사례

가) 사례1: 상급병실료 특정내역 미기재 및 청구착오로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특정내역	
		착오사례	올바른 청구
90011	상급병실료-1인실[1] 1*1*1	“입원 당시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사용함”	E/20210701/20210702
90013	상급병실료-3인실 1*1*2	(기재하지 않음)	E/2020522/20210524

※ JJ006: ‘상급병실료’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나) 사례2: 상급병실료 비용산정 목록표 미신고로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90011	상급병실료-1인실	120,000	1	1	1	상급병실료 비용산정 목록표 미제출

#### ○ 청구방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1. 청구 코드

한방	90011상급병실료-1인실	90012 상급병실료-2인실	90013 상급병실료-3인실
----	----------------	-----------------	-----------------

##### 2. 코드구분

한방	A: 수가	B: 준용, 신의료기술등 급여 결정신청건(행위, 치료재료)
	C: 약가	H: 치료재료

※ 코드는 수가, 준용, 약제 및 동 의약품의 일반(성분)명, 원료, 조제(제제)약, 치료재료로 분류되며 각각의 코드는 다음과 같은 코드 구분자를 갖는다.

3. 입원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M
일반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E

4. 특정내역 기재방법

-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9(4)	JJ006	X(1)/ccccymm/ccccymm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수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비용산정 목록표 신고방법

비용산정 목록표 신고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용산정 목록표 → 코드 또는 품명 입력 후 조회 →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코드 체크박스 선택 → 확인 →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코드의 비용, 신청일 기재 (청구하는 행위의 진료 일을 기준으로 입력) → 접수 클릭

- 비용산정 목록표 신고 결과 조회 방법

신고 결과 조회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급여 목록신고 결과조회

## 2. 약침·약제 조제현황 청구착오

## ○ 착오청구 사례

- 사례1: 약침술(JJ002)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미기재로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특정내역기재란	
		착오사례	올바른 청구
93011	약침술(1부위)	(기재하지 않음)	JJ002: 12345678/어혈약침/요·배부/ 원액0.1ml

## ○ 청구방법

- 약침·약제 특정내역 기재방법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A	9(8)	JJ002	탕전실 기관기호/약침 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

## 3. 추나요법 청구착오

## ○ 착오청구 사례

- 가) 사례1: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미등록하여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40710	추나요법-단순추 나	16,970	1	1	1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미수료

- 나) 사례2: 추나요법 면허번호 기재착오 및 미존재하여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특정내역기재란	
		착오사례	올바른 청구
40710	추나요법-단순추나	(기재하지 않음)	(코드)JJ007 3/12345/20210419

주. JJ007: '추나요법 실시 한의사, 실시일자'를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청구방법

- 추나요법 사전교육 이수 현황 신고 방법

추나요법 사전교육 이수 현황 신고 절차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a href="https://www.hurb.or.kr">https://www.hurb.or.kr</a> )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클릭 → 신규신고 → 의(약/조산)사 현황 목록에서 “변경” 또는 “신규입사” 클릭 → 자격등록 탭 → ‘교육/경력이수정보 신고항목’ 에서 ‘교육/경력추가’ 클릭 → “임시 저장” 후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 → 파일첨부(교수 이수증) 후 “최종제출” 클릭

- 추나요법 사전교육 이수 신고 결과 조회 방법

교육이수 신고 결과 조회 방법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a href="https://www.hurb.or.kr">https://www.hurb.or.kr</a> )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에서 확인 가능 ※ 처리완료시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추나요법 특정내역 기재 방법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A	9(4)	JJ007	3/X(10)/ccyymmdd
- 면허종류: 3(한의사) - 실시한 한의사가 다른 경우 특정내역을 각각 기재 - 실시 일자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실시일자를 “ /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면허종류/면허번호/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일자...) ※ 단, 외래 진료의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만 기재			

## 4. 한방물리요법 의료장비 미신고

## ○ 착오청구 사례

- 사례: 한방물리요법-경피적전기자극요법(TENS) 의료장비 미신고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93026	한방물리요법- 경 피 전기 자극 요법 (TENS)	4,120	1	1	1	의료장비 미신고

## ○ 청구방법

- 한방물리요법 의료장비 신고 방법

## 한방물리요법 장비 신고 절차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한방물리요법 장비신고 접수 → 의료기관현황(작성자, 전화번호 등 기입) → 행추가 → 장비번호 클릭 후 선택, 장비허가번호 또는 모델명 입력 후 조회 → 해당 내역 선택 후 확인 → 의료기기품목일련번호, 제품명, 구입일자, 적용개시일자 입력(장비 뒤편 라벨지 부분에서 확인가능) → 파일추가 → 2가지 자료 첨부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사본) → 접수

- 한방물리요법 장비 신고 결과 조회 방법

## 한방물리요법 신고 결과 조회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한방물리요법 장비신고 결과조회

## ※ 처리상태

- 접수완료: 한방물리요법 장비 신고 접수에서 최종 제출한 상태
- 승인: 신고내역 승인 완료
- 반송: 기입내용 오류 및 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 등 신고내역 반려 처리  
(비고란에서 반송사유 확인 가능)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5. 한방파스 청구착오

○ 착오청구 사례

가) 사례1: 한방관련의약품-한방파스 미신고로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92012	한방 관련 의약품-한방파스 [1]	367	1	1	1	구입증빙자료 미제출분 조정

나) 사례2: 한방관련의약품-한방파스 특정내역의 의약품 표준코드 기재착오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특정내역	
		착오사례	올바른 청구
92012	한방 관련 의약품 -한방파스 [1]	92012/정우신약콜마 한방만통고카타플라스마	88066120002/정우신약콜마한방만 통고카타플라스마

○ 청구방법

- 한방 관련 의약품 신고 방법

한방 관련 의약품 신고 절차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용산정 목록표 → 행추가 → 코드 또는 품명 입력 → 제출 하고자 하는 비용산정 목록표 코드 체크박스 선택 → 확인 → [작성재 기재 → [비용] 실구입가 기재 → [적용(신청일)] 청구하는 행위의 진료일을 기준으로 입력 → [참조란] 상세 명칭 및 내용 입력 → 파일추가 클릭하여 증빙자료 파일 첨부 (거래 명세서, 가격의 산출근거 및 내역 자료 등 첨부) → 접수

- 한방 관련 의약품 특정내역 기재 방법) 의약품 표준코드/명칭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A	9(4)	JJ003	9(13)/X(100)

## 6. 일회용 부항컵 미신고

○ 착오청구 사례

- 사례: 일회용 부항컵 미신고 조정된 경우

코드	한글명	단가 (원)	1회 (투약)	일투	총투	조정사유
P0001004	일회용부항컵 전규격	114	1	2	1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 청구방법

- 일회용 부항컵 등 건강보험 치료재료 신고 방법

## 건강보험 치료재료 신고 절차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관리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 신규등록  
→ 행추가 → 코드 또는 품명 입력 → 구입일자 선택 → 조회 → 제출 하고자 하는 비용  
산정 목록표·코드 체크박스 선택 → 확인 → [구입일자] 선택 → [구입량] 실구입가  
기재 →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사] 기재 → [작성자] 기재 → 접수

- 일회용 부항컵 등 건강보험 치료재료 신고결과 조회 방법

## 건강보험 치료재료 신고 결과 조회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 청구 → 치료재료 관리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 신규등록  
→ 치료재료 구입내역

-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복제할 수 없습니다.
- 동 책자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령 및 관련규정 등 변경사항은 법제처 또는 관련법령, 규정 소관부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의사례

발행월 2026년 6월

발행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대표전화 1644-2000

인쇄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편의성 향상을 위한

# 자동차보험 데이터 제공 서비스



1



## (국민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찾기

- 지역 및 진료구분(의과·치과·한방) 조건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 의료정보 ▶ 자동차보험 진료(청구)기관 찾기



2



## (의료기관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등록 신청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 자동차 보험 ▶ 우리병원 맞춤형 정보 ▶ 진료비 청구기관 신청



3



## (민간사업자 등)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Open API

-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자동차보험' 검색 후 활용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